

투자과 연금

SPRING 2023 Vol.10

ISSUE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펀드 투자하고, 소득공제 받고...

ASSET RESET

ETF로 채권투자 시작하려면?
만기매칭형도 살펴보세요

RETIREMENT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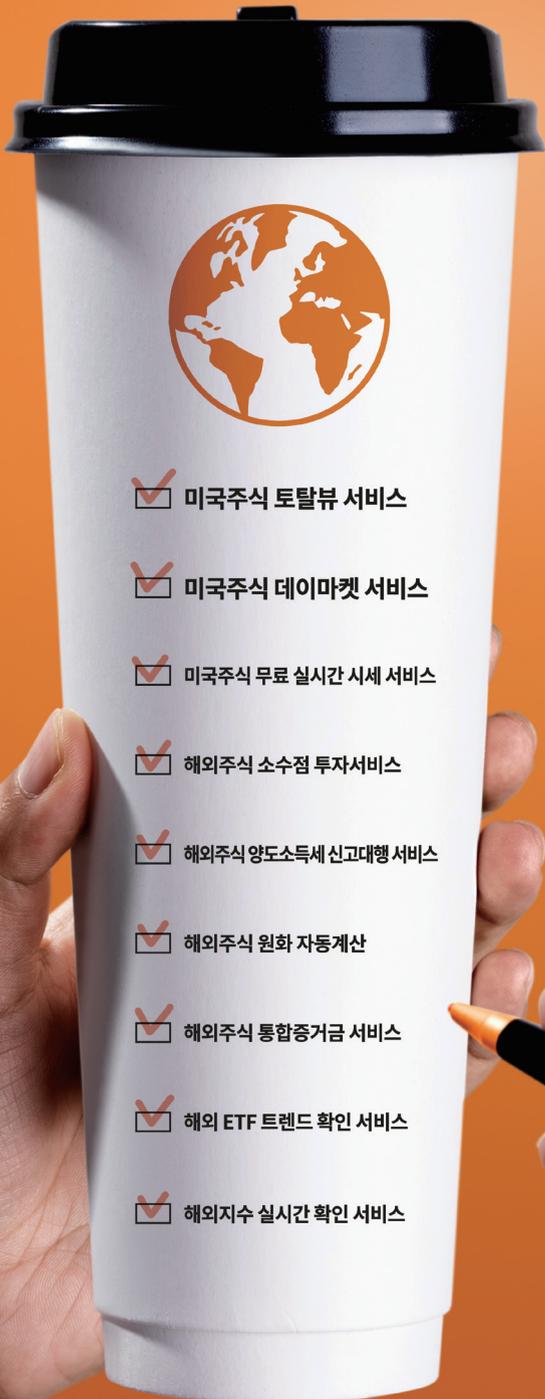
은퇴 후 그림 같은 집 사고 싶을 때
필요한 9가지 점검 포인트

PENSION REFORM

공적연금 개혁 시대의 연금 활용법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라





- 미국주식 토탈뷰 서비스
- 미국주식 데이마켓 서비스
- 미국주식 무료 실시간 시세 서비스
-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서비스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 해외주식 원화 자동계산
-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서비스
- 해외 ETF 트렌드 확인 서비스
- 해외지수 실시간 확인 서비스

해외주식 투자에 필요한 서비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다~해드립니다!

남들 되는 건 기본, 다른 곳에서 안되는 서비스까지
해외주식 투자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있는 곳,
대한민국 대표 해외투자 전문가 미래에셋증권에서
해외주식 서비스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보세요.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 1588-6800]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주식]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주식]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온라인 0.25~0.45%, 오프라인 0.5~1.0%(국가별상이, 국가별제비용 별도 발생,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참고) ■ 국가별제비용 미국: 매도시 0.00229%, 중국(상해A/심천A): 매수 0.00987% / 매도 0.10987%, 홍콩: 매수 및 매도 시 각 0.13785% (추후변동 가능, 이외 국가의 제비용 및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참고)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2-03501호 (2022.10.20~2023.10.19)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미래에셋증권의 차이를 확인하세요

- 글로벌 자산배분과 철저한 사후관리
- 투자전문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포트폴리오
개인연금 WRAP 70+/40+/30+/20+
- 글로벌 기준으로 선별한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초저위험 포트폴리오 / 저위험 포트폴리오 1,2 / 중위험 포트폴리오 1,2 / 고위험 BF, TDF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 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계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랩] ■ 연금저축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 랩어카운트는 고객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 (DC/IRP)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해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5천만원까지(운용회사 별 합산) 예금자 보호 ■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 DC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0%~0.28%, 운용관리수수료(후취) 연 0.10%~0.30%(적립금 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IRP 자산관리 수수료(후취) 연 0.1%/ 운용관리수수료(후취) 1억 미만: 연 0.2%, 1억 이상~3억 미만: 연 0.18%, 3억 이상: 연 0.15%(장기계약 할인 및 다이렉트계좌의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 ■ 개인연금 랩어카운트/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의 수수료는 무료이나, 금융상품별 수수료, 보수는 별도 발생 가능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2-04163호 (2022.12.15~2023.12.14)

글로벌 투자 파트너 -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C O N T E N T S

COVER STORY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라 공적연금 개혁 시대의 연금 활용법



04

- 06 국민연금개혁흐름
국민연금 개혁,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나
- 08 해외 연금개혁
주요 선진국들의 연금 개혁, 사적연금에서 대안 찾다
- 12 사적연금 활용원칙
공적연금 축소 시대의 사적연금 활용법,
3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 14 국민연금 수령전략
노령연금, 당겨 받을까, 제때 받을까, 늦춰 받을까
- 18 개인연금 절세효과
개인연금, 늘려야 한다면
절세제도 활용해 '시간의 복리효과' 노려라
- 22 셀프연금
셀프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백 메우고 평생 월급 만든다
- 26 월 분배형 ETF 활용
월 분배형 ETF 활용해 셀프연금 만들 때 꼭 챙겨야 할 포인트 5

GLOBAL SENIOR STORY

전 세계 시니어들의 노후 트렌드



40

43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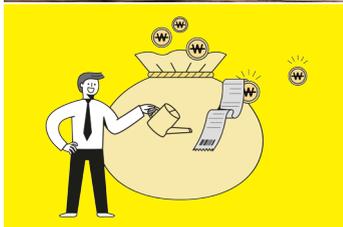
- 40 미국 치매노인과 가족 간병인 돕는 최신 기술제품 네 가지
'스마트 옷' 입은 치매환자,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 수 있다
- 43 일본 日 액티브시니어의 주체적 죽음 맞이 '종활(終活)' 10년
인생의 끝, 준비하지 않으면
'웰다잉'은 없다
- 46 독일 독일 뮌헨시의 노인 복지제도 개혁 프로젝트
요양시설 짓기보다 주거환경 바꿔
노인들의 행복지수 높인다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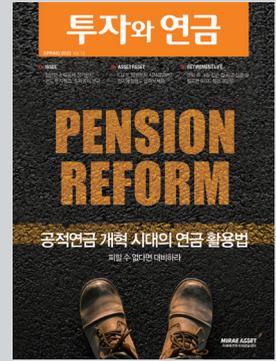


32



36

- 28 **ASSET RESET** ETF, 이것이 궁금하다
ETF로 채권투자 시작하려면? 만기매칭형도 살펴보세요
- 32 **PESION Q&A** 연금 족집게 문답
연금계좌로 이체한 퇴직금,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34 **FOCUS** ISA 채권투자
ISA 활용 소액 채권투자, 비과세 혜택 '듬뿍'
- 35 **INSURANCE Q&A** 보험 길라잡이
은퇴후 건강보험료 부담,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대비할수 있어
- 36 **ISSUE** 청년 절세 펀드 입체분석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펀드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도 받고...
- 50 **CARTOON** 흥승우의 울드
10년치의 나트름
- 54 **RETIREMENT LIFE** 은퇴 후 주거
은퇴 후 그림 같은 집 사고 싶을 때 필요한 9가지 점검 포인트
- 56 **ESSAY** 이근후 교수의 재미있게 나이 드는 법
내가 처음 본 중년 여성과 데이트한 까닭



SPRING 2023

Vol.10

발행처 (주)엑셀런스코리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65길 6,
1302호(여의도동, 센트럴빌딩)
Tel 02-2038-8980
Fax 02-3273-8981

발행인 윤길주
편집인 장원수
아트디렉터 이민자
사진 이원근, 강현욱
교열 중앙일보어문연구소
이미지 gettyimagesbank·뉴스시스·연합뉴스
엑셀런스코리아DB·Shutterstock

등록일 2020년 11월 30일
등록번호 영등포 사 00056
간별 개간(연 4회)
발행일 2023년 4월 5일
출력·인쇄 웰컴피앤피(031-942-2203)

투자와 연금

정기구독 안내

〈투자와 연금〉은 새로운 개념의 투자 매거진입니다.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 투자 및 연금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신청하시면 원하는 곳에서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구독료가 인상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때까지 종전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정기 구독료(연 4회) 1만9000원(배송비 포함)

ISSN 2951-1550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02-2038-8980

insight@insightkorea.co.kr

계좌번호

우리은행 1005-900-911582

예금주: (주)엑셀런스코리아

이 책에 실린 어떤 내용도 무단복제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하라

공적연금 개혁 시대의 연금 활용법



PENSION
REFORM

■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늘리고, 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연금 납부기간(기여기간)을 기존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했다. 프랑스뿐이 아니다. 독일, 스웨덴을 비롯한 이웃 나라 일본까지 과거 전면적인 연금 개혁을 단행한 국가들에서도 연금 적자의 심각성을 근거로 또다시 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상황은 비슷하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으로 4차 발표 시점 대비 2년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예상이 발표되면서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저출산 고령화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가속화하고 있다는 위기의식과 65세 이상 인구의 노인 빈곤율이 40%로 OECD 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점 등 국민연금 의존도가 높은 상황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은 더 많이 내거나, 적게 받거나,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돼 왔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개혁 방향 역시 이와 같은 흐름을 보여왔고, 앞으로도 그럴 전망이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공적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노후소득 설계에 있어, 노후 생활비의 기본 토대가 되는 공적연금 의존도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적연금이 현실적인 대비책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 여러 선진국에서도 사적연금을 자동적으로 혹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함으로써 국민연금을 보완할 노후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또한 정부가 사적연금에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하고, 공적연금 납입액의 일부를 사적연금으로 환입하는 제도를 운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역시 사적 연금계좌(퇴직연금 + 연금계좌)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공적연금의 개혁 흐름을 헤쳐 나가는 데 있어 사적연금 비중 강화가 이제 불가피해졌다고 판단하는 투자자라면, 제도와 금융상품들을 활용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적연금을 늘리고 연금화할 필요가 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절세혜택이 큰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다. 연금은

국민연금 개혁 흐름

국민연금 개혁,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나

해외 연금 개혁

고령사회 선진국 연금 개혁, 사적연금에서 대안 찾다

사적연금 활용원칙

공적연금 축소 시대의 사적연금 활용법, 3가지 원칙 기억해야

국민연금 수령전략

노령연금, 당겨 받을까, 제때 받을까, 늦춰 받을까

개인연금 절세효과

개인연금 축적은 선택 아닌 필수, 절세계좌로 '시간의 복리효과' 노려라

셀프연금

셀프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백 메우고 평생 월급 만든다

월 분배형 ETF 활용

월 분배형 ETF 활용해 셀프연금 만들 때 꼭 챙겨야 할 포인트 5

장기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적은 세금이라도 아끼면 장기간 누적되어 큰 성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연금자산을 차곡차곡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며 운용을 할 필요가 있다. 연금자산의 수익률이 점점 더 노후자산 마련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사적연금 자산을 축적해, 공적연금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온 것이다.

선진국들에서 실시된 크고 작은 연금 개혁이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하지만 인구 감소는 거스를 수 없는, 다가온 미래다. 공적연금 개혁을 불가피한 현실로 판단해 사적연금 활용에서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 피할 수 없다면 대비해야 한다. 출발선에 서자. **M**

1

2

3

4

5

6

7

국민연금 개혁,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나

역대 국민연금 개편 흐름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Editor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연구원

■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반면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고령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65세 인구 비중이 4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는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2023년 제5차 재정계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기금 소진 시점이 2055년으로 종전 발표에 비해 2년 가까이 앞당겨졌다.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가 맞물려 재정계산을 할 때마다 기금 소진 시점이 빨라지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다. 가입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의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변화의 방향성을 짚어본다.

시작 이후 계속된 제도 개혁

국민연금은 1988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4년 후인 1992년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03년~2007년에는 1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사업장 전체에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됐다. 사업장 가입자뿐만 아니라 1995년엔 농어촌지역, 1999년엔 도시지역 가입자까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자리 잡았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1988년 443만 명에서 2021년 2234만 명으로 증가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84.6%(2021년 기준)가 공적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의 비중

이 압도적으로 높다. 국민연금은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후소득 준비 수단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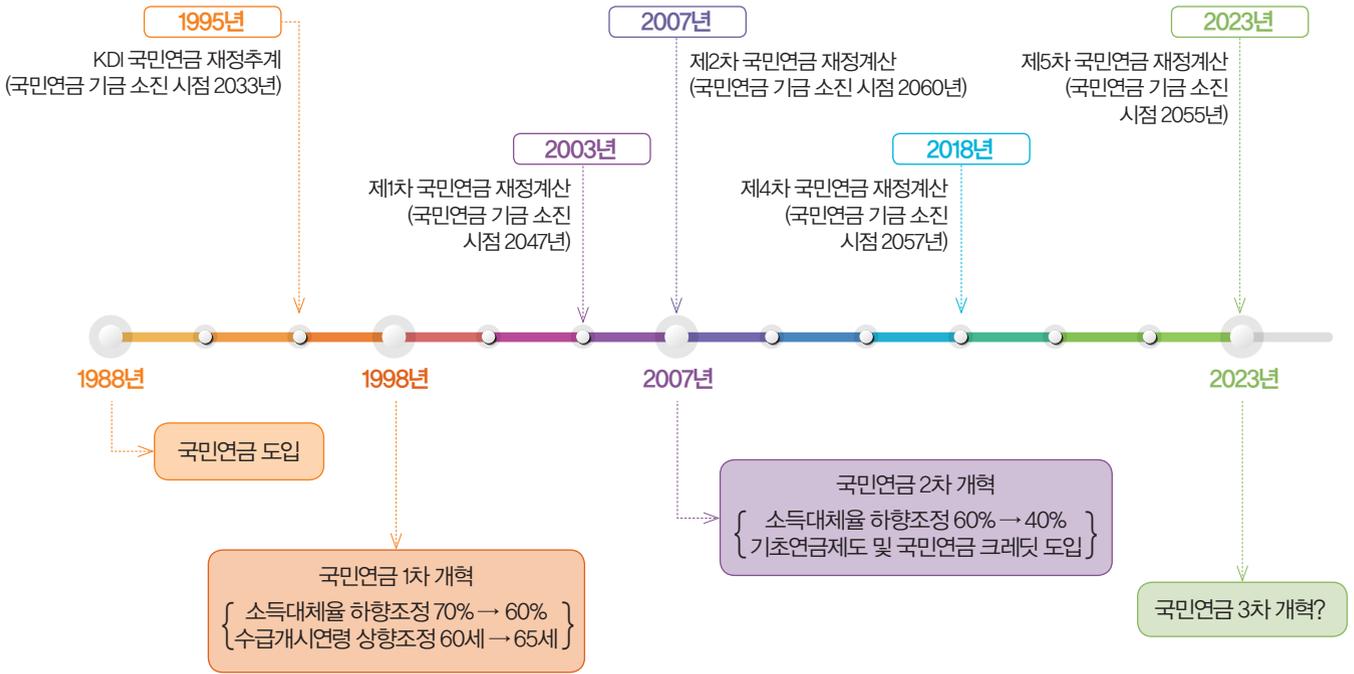
제도를 도입할 당시부터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처음 국민연금이 도입될 당시 소득대체율은 70%였다. 즉, 국민연금에 40년 가입하면 가입기간 평균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이렇게 연금액은 큰 데 반해 보험료는 적었다. 가입자는 소득의 3%만 보험료로 납부하면 됐다. 이 중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구조였다.

그만큼 초창기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였다. 국민연금제도 도입 후 보험료율을 2차례(1993년 6%, 1998년 9%) 인상했지만 국민연금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는 해소되지 않았다. 199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민연금 기금이 2033년에 소진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고,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적인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 유지기간을 늘리기 위해 1998년 1차 개혁을 단행했다. 이때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고, 수급개시연령은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했다. 그 결과 제1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에서 나타난 기금 고갈 시점은 2047년으로 기존 예측(2033년 소진) 대비 13년 연장됐다.

더 나아가 정부는 2003년 제1차 재정계산을 근거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85% 높이고, 급여의 소득대체율 수준을 60%에서 50%으로 내리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인 '안티 국민연금 사태'와 같은 국민적 반발에 부딪쳐 해당 법안은 없던 일이 됐다.

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일어난 배경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화라는 취지를 내세워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 대한 대



책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대책위원회'를 설치해 해법을 모색했고, 2004년~2007년까지 국회 합의를 거쳐 제2차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와 크레딧(조건에 해당하면 보험료 보조) 제도를 도입해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소득대체율 60%에서 40%로 낮춰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게 골자다. 2차 국민연금 개혁안을 관철시키는 데 진통이 있었지만, 결국 법안은 통과되었고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로 정착됐다. 2차 개혁 결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종전 재정계산된 소진 시점(2047년)에 비해 13년 연장됐다(2008년 제2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논의

국민연금제도 시행 후 20년 동안 2차례에 걸쳐 제도 개혁을 추진했지만, 기금 소진 시점은 재정계산 때마다 빨라지고 있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에서 산출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이었고, 2023년 제5차 재정계산에서는 2055년으로 또 앞당겨졌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18~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인부양비는 2023년 27.1%에서 2081년

까지 110.9%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 연금개혁위원회 및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여러 개혁 안건을 두고 논의 중이지만, 전문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 현행 보험료율 9%를 10년에 걸쳐 15% 수준까지 올리는 대신에 목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는 안과 목표 소득대체율을 기존대로 유지(40%)하고 보험료율만 인상하는 안이 팽팽히 맞서 있다.

제5차 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국민연금 기금을 고갈시키지 않는 필요 보험료율은 17~24%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렇게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가입자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결국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낮추거나 연금개시연령을 뒤로 늦추는 방식으로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의 기능 축소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보다 고령화를 먼저 경험한 선진국들도 공적연금이 축소되는 과정을 겪었으며, 개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M**

주요 선진국들의 연금 개혁, 사적연금에서 대안 찾다

주요 선진국에서 진행 중인 공적연금 개혁과 그 대안들을 살펴본다



Editor 박영호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이사

■ 최근 프랑스는 연금재정 위기를 근거로 근로자의 정년 및 연금 납입기간의 추가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는 연금재정 적자 규모가 2023년 2억 유로에서 2027년 103억 유로, 2030년 135억 유로로 급격히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보험료를 인상하고 기대수명 및 출산율에 연동해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등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일본 역시 고령화 문제가 심화될 조짐을 보이자 공적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본 가입기간 연장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다.

우리에 앞서 연금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왔던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경우 오랜 기간 연금개혁 과정을 거쳤음에도 연금 개혁 논의를 재개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제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우리나라 역시 연금개혁이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같은 문제를 고민한 해외 주요국들은 어떤 방향으로 공적연금 개혁을 이끌어왔고, 어떠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더 부담하거나 늦춰 받거나 덜 받거나

일본과 서구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은 1980년대 들어 경제성장 둔화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연금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적립률을 높이든지, 연금을 더 늦게 받게 하거나 덜 주는 방법을 통해 기금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당시 보험료를 인상, 연금 수급개시연령 연장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연금 급여 조정이 시행됐는데, 연금 구조의 틀은 그대로 둔 채 핵심 변수를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

해외 주요국의 공적연금 개혁 이슈 및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재정적자 확대 본격화로 정년 연장(62세 → 64세) · 연금 납입기간 연장(42년 → 43년) 재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개혁(보험료를 상한선 18.3% 지정, 연금 급여 자동조정장치 도입) · 2020년 일부 연금 수급개시연령 연장 · 최근 수급개시연령 추가 연장 및 기본 가입기간 연장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비례연금* 및 부과 방식 공적연금 제도**로 변경 · 2020년 연금 수급개시연령 연장(62세 → 64세) · 2026년부터는 기대수명 변화에 따라 수급개시연령이 자동조정되도록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4년 연금액을 인구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자동적으로 감소하도록 설계 (2030년까지 공적연금 보험료를 22% 이하로, 소득대체율 43% 이상으로 유지 의무화) · 2007년 법적 정년 및 연금수령 나이 조정 (65세 → 67세) · 공적연금 재원 부족에 대비해 '주식연금' 도입

* 소득비례연금: 생애소득에 기초해 보험료 총액이 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 급여액을 산출하는 방식
 ** 부과 방식 공적연금(pay as you go): 기금을 미리 쌓아두지 않는 방식, 납부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지급해야 할 연금 급여에 맞춰 책정

하는 방식이었다.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비)가 대부분 20을 넘어선 1990년대부터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러한 모수 조정 중심의 공적연금 개혁이 공론화됐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금 개혁이 추진됐다.

이 시기부터 많은 국가들이 기금 적립 속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을 추진했다. 보험료를 인상의 경우 여러 해에 걸쳐 점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미국 12.4%, 캐나다 11.9%, 스웨덴 18.5%, 일본 18.3% 등 최종적으로 소득의 10%를 뚜렷하게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섰다(한국은 9%,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4.5%).

연금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금 지출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선택하기도 했다.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해외 주요국을 보면 기존 60세에서 시작해 65세까지 상향조정을 완료한 경우가 많다. 향후 10년 내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최대 68세까지 수급개시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영국은 한발 더 나아가 이러한 수급개시연령 상향 로드맵을 단기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조치를 더했다.

프랑스는 정년 및 연금 납입기간 연장을 통해 사실상 연금 지급시기를 늦추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다. 1993년과 2003

연금 개혁으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되면서, 각국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 강화와 일반 국민에 초점을 맞춘 사적연금 장려 정책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년 두 차례에 걸친 연금 개혁으로 완전연금급여(연금보험료의 납입기간과 수급개시연령을 동시에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를 수령할 수 있는 연금 납입기간을 기존 37.5년에서 42년으로 늘렸으며, 현재 이를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상황이다.

독일·영국, 연금 급여 상승 억제에 초점

연금 급여 조정 측면에서는 목표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낮춰 연금을 삭감하거나 산출식의 기준을 보수적으로 변경해 급여 상승이 억제되도록 했다. 예를 들어 독일은 1992년의 개혁을 통해 연금 급여 계산식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세전소득에서 이보다 낮은 세후 가처분소득으로 변경함으로써 실질 연금 급여를 낮췄다. 영국의 경우 급여 인상률이 연동되는 기준을 기존 소매물가 상승률에서 변동성이 보다 적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임금 상승률과 2.5% 중 최대치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 연금 급여의 추세적 상승을 통제했다.

연금 급여를 감액하기 위해 거시경제변수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나라도 있다. 스웨덴은 연금 부채가 연금 자산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연금 감액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며(1998년), 독일은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 연금이 자동으로 감액되는 구조를 수립(2004년)했



공적연금 개혁과 함께 진행된 선진국의 사적연금 강화 정책



· 직장연금(NEST) 자동가입제도 도입
· 근로자 및 사용자가 연금 적립에 기여하면 정부가 이에 매칭해 일부를 기여



· 사적연금 제도로 리스터연금(Riester Rente) 도입
· 가입자가 연소득의 일정 비중(4%)을 납부하고 정부가 기본보조금 및 자녀수당 성격의 일정 보험료 지원



· 개인연금제도로 수익연금(Premium Pension) 도입
· 공적연금 보험료 중 일부를 개인연금계좌에 납입해 개별 운용하고 적립액만큼 연금 수령

다. 일본은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자동조절장치를 두고 (2004년) 기대수명 연장을 반영해 연금 급여가 자동으로 감액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연금 개혁으로 인해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대체로 약화되는 것이 불가피한 흐름이 되었다. 영국·캐나다·독일·일본 등에서는 연금 급여의 상승을 제한하는 장치를 둬으로써 공적연금의 소득대체를 개선이 억제되는 효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스웨덴의 경우 오래전 보험료율을 18.5%까지 인상하는 등 기금 적립 기반을 대대적으로 강화한 바 있다.

사적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연금 개혁으로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화하면서, 각국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 강화와 일반 국민에 초점을 맞춘 사적연금 장려 정책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

이 중 사적연금 장려 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자동가입 또는 의무가입 제도 마련 ▲정부가 사적연금에 보조금 기여 ▲공적연금 보험료 일부를 사적연금에 납입·운용하도록 한 것 등으로 파악된다. 주요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국은 근로자를 NEST(National Employment Saving Trust)라는 직장연금제도에 자동가입하도록 했다. NEST

는 8% 이상의 보험료율을 충족해야 직장연금제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직장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여금을 납입하고 정부가 이에 매칭해 일부 기여금을 납입하도록 했다. 즉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보험료율 4%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면, 정부는 보험료율 1% 수준에 해당하는 소득세 일부를 근로자의 계좌에 돌려주는 식이다.

독일의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조인 사적연금으로서 리스터연금(Riester Rente)제도를 2001년에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2022년 현재 리스터연금은 가입자가 연간 소득의 4%(최대 2100유로)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정부가 175유로(부부 기준 350유로)의 기본보조금과 함께 자녀 1인당 최대 300유로를 지급한다. 보조금을 포함한 리스터연금 납입액 전체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스웨덴은 공적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수익연금(Premium Pension)이라는 개인연금계좌에 적립할 수 있게 했다. 수익연금은 1998년 공적연금 개혁과 함께 도입한 제도로, 공적연금 보험료율 18.5%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 적립해 가입자가 알아서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수익연금 급여는 당연히 운용수익률에 따라 달리 정해지는 구조다. 또 가입자는 일시금과 연금 형태 수령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연금 형태로는 종신연금 방식도 마련해 두었다. **M**

#투자자와연금TV

#구독 #좋아요 했더니

#연금관리법 #투자꿀팁

내 손안에 쏙!



꿀정보 시리즈 LINE UP

- 투자살롱
- 연금 TALK TALK
- 투자THE연금
- 우먼&머니톡
- 유튜브 세미나 and more!

“투자자와연금TV” 구독은?

▶ NAVER TV 🔍 YouTube 🔍 에서

‘미래에셋투자자와연금센터’로 검색하세요!





공적연금 축소 시대의 사적연금 활용법, 3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퇴직연금 상태 점검하고, 활용전략을 재구상해야 하는 시점이다

Editor 박영호 미래셋투자자연금센터 이사

■ 지난 두 차례의 국민연금 개혁과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개혁 과정에서 보듯, 향후 공적연금 개혁에서는 더 부담하거나, 더 늦게 받거나, 덜 받게 하는 식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각국 정부가 장려책을 쓰는데서 알 수 있듯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퇴직연금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활용 전략을 재구상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을 정리한다.

01 개인연금 적립 비중을 강화한다

현재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최고 65세다. 종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연장돼 2013년부터 2033년까지 매 5년 단위로 1세씩 상향조정되기 때문이다. 출생연도로 보면 1969년 생부터 65세에 정상적인 노령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조기연금을 신청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 수령 전 상당 기간 은퇴생활비를 55세부터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연금 개혁 후 국민연금 수급개시가 더 미뤄지거나 상응하

는 연금액 축소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 영역의 연금 자산 적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총급여의 12분의 1 이상이 적립되는 퇴직연금 외에 개인이 비중을 결정해 추가 적립할 수 있는 연금저축 및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통해 젊은 시절부터 연금 자산을 충실히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연금 적립의 총체적인 부담은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전 개혁 사례에서 볼 때 최소 수년간, 최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천천히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개인연금은 이에 맞춰 시기별로 적립률을 조정하면서 쌓아 나갈 수 있다.

02 연금 자산배분에 유용한 상품체계를 활용한다

국민연금의 강점은 물가를 반영한 중신급여 지급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대신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으로 노후 소득 인출 기능을 보강하려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면서도 연금 자산이 조기 소진되지 않도록 하는 데 무게를 뒀다. 이를 위해서는 적립 및 인출 기간 중 운용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 운용 결과가 노후 삶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그 해법은 종전과 다름없이 적절한 자산배분과 지속적인 재조정(rebalancing)을 통한 장기투자뿐이다.

기관투자가가 기금을 운용하듯 개인이 지속적으로 연금 자산을 배분하고 재조정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연금 운용에 대한 자산배분 마인드를 갖되 현실적으로는 자산배분 및 재조정 기능을 갖춘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

가령 TDF(타겟데이트펀드)를 활용하면, 자동적으로 생애 주기와 위험선호 성향을 반영한, 장기적인 연금 자산 투자가 가능하다. 최근 일부 금융회사에서 개인 맞춤형 연금 운용 포트폴리오를 자문형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를 'managed account'라고 하며, TDF와 함께 개인의 연금 자산배분을 효과적으로 대행하는 상품체제로 정착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제

국민연금 수급개시가 더 미뤄지거나 상응하는 연금액 축소가 있을 경우에 대비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 영역의 연금 자산 적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중 총급여의 12분의 10 이상이 적립되는 퇴직연금 외에 개인이 비중을 결정해 추가 적립할 수 있는 연금저축 및 IRP(개인형퇴직연금)를 통해 젊은 시절부터 연금 자산을 충실히 준비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하는 연금계좌의 자산배분 자문서비스가 점차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

연금 자산의 적절한 배분 및 재조정에 있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을 더한다면 인컴형 자산을 활용하는 것이다. 인컴형 자산은 채권의 이자수입, 주식배당금, 부동산 임대료수입 등을 기반으로 한 분배금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거나 이를 재투자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투자 자산이다. 퇴직연금에서 직접투자가 가능한 채권과 채권펀드, 배당주 펀드 및 ETF(상장지수펀드), 리츠(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등에 투자함으로써 인컴형 자산을 연금 자산배분에 활용할 수 있다.

03 자동저축 시스템 만들고 중도인출 없이 장기운용한다

급여 중 알아서 일정 비중이 적립되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외에, 추가 적립을 위해 연금저축 및 IRP에 가입하도록 한다. 일정 금액을 연금계좌에 정기적으로 자동이체해 지정한 금융상품에 투자되도록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적립식 장기투자를 통해 연금 자산을 모아 나가게 된다. 이를테면 연금의 자동저축 또는 강제저축 시스템을 만든다고 할 수 있다.

세제혜택과 장기운용을 통해 연금 자산 축적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직·퇴직과 목돈 지출 사유로 발생하게 되는 중도인출을 최대한 방지할 필요가 있다. 중도해지 없이 연금을 축적하려면 목돈 지출을 위한 자금은 ISA(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혜택이 있으면서 연금과 분리해 운용·관리할 수 있는 금융계좌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M**

노령연금, 당겨 받을까, 제때 받을까, 늦춰 받을까

국민연금 수령에도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Editor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상무

■ “당겨 받을까, 제때 받을까, 아니면 늦춰 받을까?”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라면 노령연금 개시와 관련해 이 같은 고민을 해봤을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나이가 들어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개시 시기는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1952년 이전 출생자는 60세, 1953년~1956년 출생자는 61세, 1957년~1960년 출생자는 62세, 1961년~1964년 출생자는 63세, 1965년~1968년 출생자는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노령연금을 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가입자가 희망하면 노령연금을 5년 당겨 받을 수 있고, 뒤로 5년 늦춰 받을 수도 있다. 당겨 받는 것을 ‘조기노령연금’이라 하고, 늦춰 받는 것을 ‘연기연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노령연금을 당겨 받는 게 좋을까, 늦춰 받는 게 좋을까. 아니면 제때 받는 게 유리할까. 지금부터 노령연금

개시 시기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을 살펴야 하는지 점검해 보기로 하자. 먼저 조기노령연금부터 살펴보고, 연기연금으로 넘어가기로 하자.

조기노령연금, 적게 받아도 빨리 받는 게 득일까?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려면 가입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다고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가입자의 월 소득이 ‘A값’보다 적지만 하면 된다. 가입자의 월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노령연금 수급개시 가능한 연령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연기연금
1952년 이전 출생	60세	55세	65세까지 연기 가능
1953~1956년생	61세	56세	66세까지 연기 가능
1957~1960년생	62세	57세	67세까지 연기 가능
1961~1964년생	63세	58세	68세까지 연기 가능
1965~1968년생	64세	59세	69세까지 연기 가능
1969년 이후 출생	65세	60세	70세까지 연기 가능

자료: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월수로 나눠서 산출한다. 이때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빼준다. 'A값'은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라 할 수 있는데, 2023년에 적용되는 A값은 286만1091원이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무턱대고 청구할 일은 아니다.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적게 받아야 한다. 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되는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이 중 기본연금액을 감액한다. 부양가족연금액은 감액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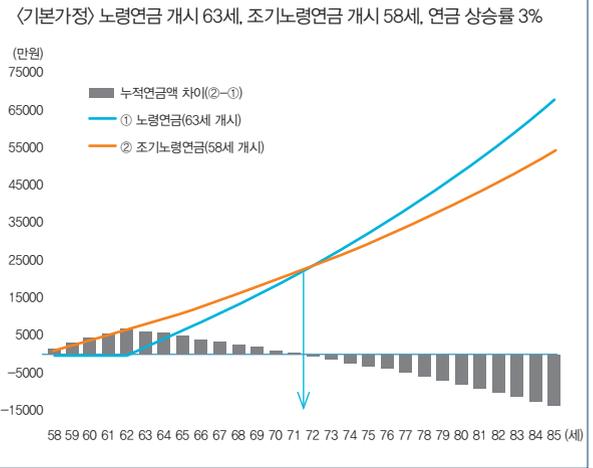
기본연금액은 연금개시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포인트씩 감액된다. 1964년생 홍길동씨를 예로 들어보자. 홍씨가 63세에 노령연금을 개시하면 기본연금액을 100%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62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기본연금액의 94%만 수령할 수 있고, 61세에는 88%, 60세에는 82%, 59세에는 76%, 58세에 개시하면 70%만 받을 수 있다.

적게 받더라도 일찍 받는 게 나을까, 제때 제대로 받는 게 나을까. 홍길동씨 사례로 돌아가보자. 58세 시점에서 홍씨의 기본연금액은 월 150만원(연 1800만원)이고, 연금액은 매년 3%씩 증액된다고 가정하자. 홍씨에게 부양가족은 없다. 이 같은 조건에서 홍씨가 58세에 연금을 개시했을 때와 63세에 개시했을 때 누적연금수령액을 비교해 보자.

홍길동씨가 58세에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기본연금의 70%에 해당하는 월 105만원(연 1260만원)을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홍씨가 63세까지 기다렸다가 노령연금을 개시하면 어떻게 될까. 58세부터 매년 3%씩 기본연금액이 늘어나면 63세에 월 174만원(연 2088만원)이 된다. 이번에는 조기수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액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저금통을 두 개 준비해서 한쪽에는 조기수령한 연금액을, 다른 쪽에는 정상 수령한 연금액을 전부 저축한다고 해보자. 58세부터 62세까지는 조기수령한 쪽 저금통에만 적립금이 쌓인다. 하지만 63세부터 정상 수령하는 쪽 저금통에 적립금이 쌓이면서 양쪽 적립금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한다. 72세부터 정상 수령하는 저금통의 적립금이 더 많아진다(그

〈그림1〉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누적연금수령액 비교



자료: 미래에셋투자자와연금센터

림1 참조).

홍길동씨가 72세 전에 사망하면 5년 조기수령하는 게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때 노령연금을 개시하는 게 낫다. 하지만 홍씨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저 생명표를 통해 생존확률을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재 60세 남성이 70세까지 생존할 가능성은 90.4%이고, 75세까지 살 확률은 81.9%다. 60세 여성이 70세까지 살 확률은 96.4%, 7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92.6%다.

연금을 받아 저금통에 넣지 않고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예상대로 연금을 받아서 투자를 하면 적립금 규모가 역전되는 시점이 늦춰진다. 하지만 많이 늦춰지지는 않았다. 투자수익률이 연평균 3%면 74세, 5%면 76세, 7%면 80세, 9%면 88세에 역전이 일어난다. 참고로 58세인 사람의 기대여명은 85.6세(남 83.2세, 여 88.3세)다.

연기연금, 늦게 받아도 많이 받는 게 득일까?

이번에는 노령연금을 연기해서 수령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최장 5년간 늦춰 받을 수 있는데, 연금 개시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기본연금액이 7.2%포인트씩 늘어난다. 따라서 연금 개시를 5년 늦추면 기본연금액이 36% 늘어난다. 여기에 연기기간 동안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분까지 더하면 기본연금액은 더욱

커진다. 하지만 연금개시를 늦춘 만큼 수령기간이 짧아진다.

그렇다면 연기 신청을 하는 게 유리할까, 제때 받는 게 유리할까. 올해 63세인 강감찬씨를 예로 들어보자. 강씨는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부양가족은 없다. 그가 올해 노령연금을 개시하면 월 150만원(연 18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강씨가 연기연금을 신청해 노령연금을 68세부터 받으면 기본연금으로 월 237만원(연 2838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수급시기를 5년 늦추면서 기본연금이 36% 증액되고, 여기에 연기기간 동안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분까지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 누적연금수령액을 비교해 보자. 이번에도 저금통 두 개에 정상 개시한 연금과 5년 연기해서 수령한 연금을 고스란히 저축한다고 해보자. 63세부터 67세까지는 정상 개시한 쪽 저금통에만 적립금이 쌓인다. 하지만 68세부터 연기수령한 쪽 저금통에 적립금이 쌓이면서 적립금 차이가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78세에 역전이 일어난다. 강감찬씨가 78세 이후에 생존할 자신이 있으면 5년 연기해서 수령하는 쪽을 택하면 된다. 참고로 현재 63세인 사람의 기대여명은 86.3세(남 84.0세, 여 88.6세)다(그림2 참조).

연기연금 신청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금수급자의 소득도 살펴야 한다.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을 감액하기 때문이다. 감액되는 연금액은 소득 크기에 따라 다르다. 'A급' 초과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면 초

과금액의 5%, 100만원부터 200만원 미만까지는 10%, 200만원부터 300만원 미만까지는 15%, 300만원부터 400만원 미만까지는 20%, 400만원 이상은 25%를 감액한다. 이렇게 해서 기본연금의 절반까지 감액할 수 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연금개시 후 5년 동안만 진행된다. 따라서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노령연금 수급시기를 5년 늦추면 감액기간을 전부 건너뛸 수 있다. 앞서 강감찬씨가 소득이 많아서 63세부터 68세까지 노령연금을 절반만 수령하는 경우와 노령연금을 5년 연기해서 수령하는 경우를 비교했더니, 72세에 역전이 일어났다. 앞서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이 없었을 때는 78세에 역전이 일어났다. 강씨가 72세 이후에 생존해 있으면 5년 연기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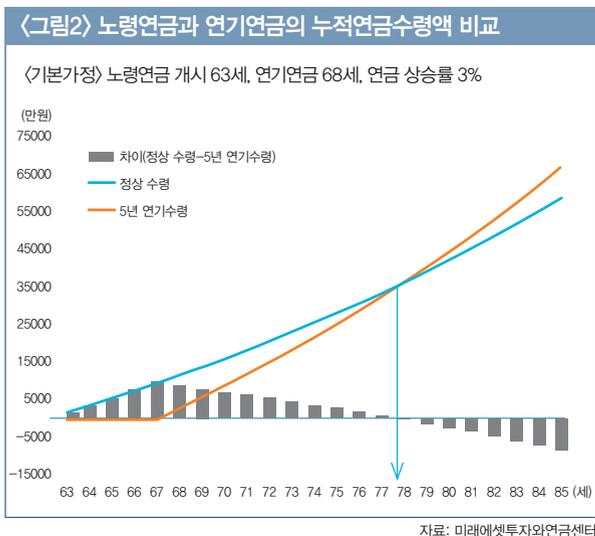
소득·건강·생존 확률 종합적으로 고려하라

연금개시 시기를 결정할 때는 소득 크기를 고려해야 한다. 소득공백기를 버텨낼 재원이 없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반대로 소득이 많아서 노령연금이 감액될 것 같으면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연금수급자의 소득과 함께 건강상태와 수명도 살펴야 한다. 오래 산다는 보장만 있으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기보다는 제때 개시하거나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일찍 사망할 것 같으면 연금개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하지만 누구도 자신이 몇 살까지 살지 알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다만 특정 연령까지 생존할 확률을 추정할 수는 있다. 2021년 통계청 생명표에 따르면, 현재 60세 남성이 7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81.9%나 되고, 80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68.3%다. 여성의 생존율은 이보다 높다. 60세 여성이 75세까지 생존할 확률은 92.6%이고, 80세까지 살아있을 확률도 84.9%나 된다.

이 같은 확률을 고려하면 노령연금 개시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게 나을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통계는 통계일 뿐이다. 통계가 내가 얼마나 살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따라서 연금개시 시기를 결정할 때는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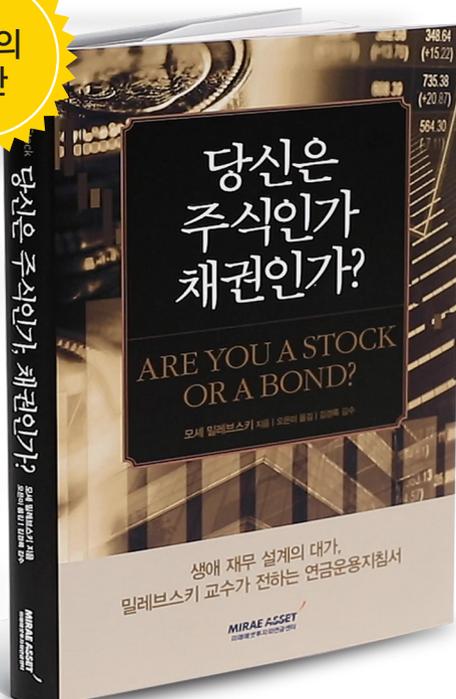


ARE YOU A STOCK OR A BOND?

당신은 주식인가 채권인가?

생애 재무 설계의 대가,
밀레브스키 교수가 전하는 연금운용지침서

화제의
신간



은퇴 후 긴 노후생활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방법은 무엇인가?

모세 밀레브스키 지음 | 오은미 옮김 | 김경록 감수

적립부터 인출까지
개인 연금자산 운용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최고의 지침서!

MIRAE ASSET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센터



개인연금, 늘려야 한다면 절세제도 활용해 '시간의 복리효과' 노려라

Editor **이동근** 미래에셋투자자산연구소 연구원

■ 최근 연금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민연금을 보완할 노후소득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자금을 충당할 수 없다면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채워 나가야 하는 게 현실이다. 스스로 노후자금을 축적해야 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축적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내 노후생활비 재원이 될 연금 자산의 서식지를 어디에 마련해야 할까? 연금 자산은 축적부터 인출까지 수년에서 수십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적은 비용이라도 아끼면 장기간 누적되어 큰 성과로 돌아온다. 같은 값이면 세제혜택이 큰 금융상품을 활용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금계좌에서 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 다섯 가지

절세를 하면서 노후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가 있는데, 둘을 합쳐 연금계좌라고 한다. 그러면 연금계좌 가입자가 누릴 수 있는 절세혜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연금저축과 IRP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세액공제를 떠올린다. 연금저축에서 한 해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는 한 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저축한 금액은 이듬해 또는 그 이후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세액공제 대상이 900만원이면 세액공제율이 16.5%인 사

연금저축과 IRP라고 하면 가장 먼저 세액공제를 떠올린다. 연금저축에서 한 해 600만원까지,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는 한 해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며 저축할 수 있다. 세액공제 한도를 넘겨 저축한 금액은 이듬해 또는 그 이후로 이월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인출할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 및 최대 환급 세액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세액공제율	연간 납입 한도*	세액공제 한도	최대 환급 세액
4500만원 이하(5500만원 이하)	16.50%	1800만원	900만원	148만5000원
4500만원 초과(5500만원 초과)	13.20%			118만8000원

*ISA 만기자금,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제외

자료:미래에셋투자자산연구소

받은 최대 148만5000원, 13.2%인 사람은 최대 118만8000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납부한 세금이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의 범위 내에서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둘째, 연금계좌 가입기간 동안 수익과 손실을 서로 상계한 다음 세금을 부과한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가입자는 하나의 계좌 내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사고팔 수 있다.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때는 수익이 나고 어떤 때는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연금계좌는 운용하는 동안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고 남은 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한다.

셋째, 연금계좌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과세하지 않는다. 세금은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인출할 때 징수한다.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 연금 외 다른 방법으로 수령할 때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면 세전 이익을 재투자하면서 복리효과를 높일 수 있다.

넷째, 연금을 수령할 때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 연금계좌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고, 55세 이상이면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 수령 당시 가입자 나이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다르다. 가입자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다. 연금 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55세 이상 70세 미만에도 4.4% 세율을 적용한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이 13.2% 또는 16.5%이고, 일반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에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10%포인트가량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셈이다.

다섯째,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연금소득이 한 해 1200만원을 넘으면 해당 연금소득을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넘더라도 수령자가 희망하면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6.5%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할 수 있다.

ISA 만기자금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다

연금계좌에는 한 해 1800만원까지만 저축할 수 있고, 저축 금액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만기가 도래하는 해에는 저축 한도와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ISA 가입자는 한 해 2000만원씩 최대 1억원을 저축할 수 있다. ISA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은 200만원(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 수익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다. 의무가입기간이 지나면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ISA 만기자금 또는 의무가입기간이 지나서 수령한 중도상환금액은 전부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 있고, 이체한 금액의 10%(300만원 한도)를 세액공제받을 수도 있다.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므로 최소 3년마다 한 번씩 ISA 만기자금 또는 중도상환금액을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연금계좌 이체는 만기일 또는 해지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올해 홍길동씨가

ISA 만기자금으로 5000만원을 수령했다면, 올해 홍길동씨는 연금계좌에 최대 6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본래 연금계좌 저축 한도 1800만원에 ISA 만기자금 5000만원을 더한 것이다. 그러면 홍길동씨는 올해 저축한 금액에서 최대 얼마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홍길동씨가 올해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저축하고, 이와 별도로 ISA 만기자금 중 3000만원을 연금저축에 이체했다고 하자. 먼저 홍길동씨는 연금저축과 IRP에 저축한 900만원은 전부 세액공제 대상이다. 여기에 연금계좌에 이체한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300만원을 더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홍길동씨는 올해 연금계좌에서 120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홍길동씨는 ISA 만기자금 3000만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300만원만 세액공제를 받았다. 이 경우 나머지 2700만원은 세액공제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하던 연금 이외 다른 방법으로 인출하던 관계없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고령자가 주택 규모를 줄여 마련한 자금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이고,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 1채만을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주택을 양도하

고 더 싼 주택을 취득하면 그 차액(1억원 한도)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다.

신규 주택을 먼저 취득했다면 취득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만약 기존 주택을 양도한 다음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이때는 취득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도가액 중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연금계좌 이체는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10억원(예시를 위해 실거래가도 동일하다고 가정)의 주택을 양도하고, 9억5000만원에 신규 주택을 취득했다고 해보자. 이 경우 차액 5000만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만약 종전 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최대 1억원을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다음 5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종전 주택을 양도한 금액과 신규 주택을 취득한 금액의 차이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보다 작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연금계좌에 1억원을 추가납입했는데,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은 5000만원인 경우가 여기 해당한다. 이 경우 추가납입한 금액 1억원을 전부 인출해야 하고, 그동안 연금계좌에서 받았던 세제혜택도 모두 반납해야 한다.

주택 다운사이징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더라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세액공제 이외 손익통산, 과세이연, 저율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회피 등의 절세혜택은 누릴 수 있다. 만약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을 일반 금융상품에 투자하면 이자와 배당을 수령할 때마다 15.4%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할 우려도 있다. 다운사이징 차액을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운용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출할 때까지 과세하지 않는다.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인정해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한 해 연금소득이 12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16.5%의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다. **M**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연금계좌 납입	
구분	내용
대상자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 부부 합산 1주택자* *종전 주택 양도일 기준으로 판단, 신규 주택을 종전 주택 양도일 이전 6개월 내에 취득한 경우 포함
대상 주택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종전 주택 기준)
납입 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 - 종전 주택 양도가액에서 신규 주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 - 신규 주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종전 주택 양도가액 - 1억원
납입기간	종전 주택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
사후관리	종전 주택보다 큰 가액의 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경우에는 납입액을 연금계좌에서 배제(5년간 사후관리)

자료:미래에셋투자자산연구소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자산관리 5원칙

저성장·저금리·고령화로 과거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노후자산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평안한 노후를 준비하려면
지금까지 익숙했던 것과 다른 노후자산 관리 원칙이 필요합니다.

01

노후자산은 글로벌로 분산투자해야 합니다.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 국내 자산에만 투자할 경우 기대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노후자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산투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2

노후자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노후자산은 장기간 운용해야 하므로 사회, 경제적 트렌드의 변화에 맞는 우량자산을 선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03

노후자산은 안정성에 초점을 두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집중투자에 따른 손실은 장기 투자로도 회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노후자산을 '자산군 간, 자산군 내, 지역별'
이렇게 3중으로 철저하게 분산해야 합니다.

04

노후자산은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질병 및 사고는 노후자산의 형성을 막고 소진을 앞당기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보장성 보험 등을 통해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05

노후자산은 적립에서 인출까지 통합적 관점에서 운용되어야 합니다.

길어진 수명과 낮은 금리는 노후자산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을 요구합니다.
자산규모보다는 현금흐름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자신에게 맞는 인출 계획을 세우고
적립 시기부터 그에 맞게 노후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셀프연금으로 국민연금 공백 메우고 평생 월급 만든다

Editor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자와연금센터 상무

■ 은퇴자에게 국민연금은 주요한 노후생활비 재원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국민연금 수령액만 가지고 노후생활비를 전부 충당하기는 어렵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부부가 노후생활을 하려면 최소 한 달에 199만원은 있어야 하고, 적정 생활비로는 월 277만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후에 수령하는 노령연금은 여기에 훨씬 못 미친다. 2022년 11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평균 58만원을 수령하고 있다. 가입기간이 20년 넘는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도 월평균 98만원밖에 안 된다. 물론 노령연금을 한 달에 200만원 넘게 받는 은퇴자도 있지만, 그 수가 전체 노령연금 수령자(527만 명)의 0.1%(5103명)에 불과하다.

결국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노령연금 수령액 사이의 소득 공백을 채우는 것은 은퇴자의 몫이다. 소득공백은 발생 시기에 따라 크게 셋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퇴직 이후 노령

연금을 개시할 때까지 소득공백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노령연금이 개시된 다음에도 노후생활비와 연금수령액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노령연금 수급자가 먼저 사망하고 나서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다.

이처럼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시기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은퇴자의 대응 방법도 달라야 한다. 지금부터 노령연금의 빈틈을 메우는 셀프연금 활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퇴직 이후 노령연금 개시까지 소득공백 메우기

퇴직하고 월급은 사라졌는데 노령연금 개시까지는 몇 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 이 기간 소득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유능한 장수는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사용한다. 은퇴자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어떤 것이 있고, 각각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자신에게 맞는 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퇴직 이후 노령연금 개시까지 은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무기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노령연금을 앞당겨 수령하는 방법이 있다. '소득이 있



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노령연금을 최장 5년 앞당겨 수령할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1964년생은 정상적으로는 63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58세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다.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연금을 빨리 받는 대신 적게 받아야 한다. 연금개시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포인트씩 감액된다. 최장 5년을 앞당겨 수령하면 연금액이 30% 줄어든다. 따라서 은퇴 초반 소득공백을 메우겠다고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나중에 소득공백이 커진다.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도 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다. 보유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부부 중 한 사람이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직후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고려해야 할 게 있다. 주택연금은 연금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우선 가입자가 연금수령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퇴직 이후 노령연금 개시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 수령기간을 정하면 된다. 연금수령기간을 지정하면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진다. 또한 가입자가 연금수령액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기간이 달라진다. 이 밖에 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한도에 맞춰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가입자가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인출금액을 정할 수도 있다.

만 실질은 대출이다. 일찍 연금을 개시하면 이자를 더 부담해야 한다. 연금수령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이 줄어든다.

연금저축과 IRP 같은 연금계좌 적립금을 활용해 소득공백을 메우는 방법도 있다.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가량 절감할 수 있다. 연금은 55세 이후에 언제든 개시할 수 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연금저축과 IRP에 가입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도 많다. 이렇게 연금계좌에 적립한 금액도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우선 가입자가 연금수령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퇴직 이후 노령연금 개시까지 남은 기간을 계산해 수령기간을 정하면 된다. 연금수령기간을 지정하면 운용성과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달라진다. 또한 가입자가 연금수령액을 지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기간이 달라진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

구분	연금수령 방법
연금 저축	① 정액식 : 원하는 수령금액 지정,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기간 변경 ② 기간분할식 : 원하는 수령기간을 지정, 운용성과에 따라 수령금액 변경 ③ 한도분할식 : 매년 계산되는 연금수령 한도만큼 수령 ④ 임의식 : 필요할 때 자유롭게 수령
IRP	① 기간 지정 : 원하는 수령기간 지정(5년 단위) ② 금액 지정 : 수령할 금액 지정(최소 5년 이상 수령할 수 있도록 금액 지정) ③ 연금수령 한도 : 매년 연금수령 한도만큼 수령 ④ 비정기연금 : 필요금액만큼만 임의로 자유롭게 수령하는 방식

자료: 미래에셋증권

종신형 연금 종류와 특징			
구분	노령연금	주택연금(종신지급방식)	연금보험(종신형)
연금액	물가변동에 맞춰 조정	변동 없음	금리, 수익률에 따라 변경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연금 지급 - 1순위 유족은 배우자 (기본연금액의 40~60%)	배우자가 연금 승계 - 연금액 변동 없음	피보험자가 생존해 있으면 수익자가 연금 수령

노령연금·주택연금·종신형 연금보험을 활용해 필수지출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마련했다면, 다음 순서는 재량지출을 준비할 차례다. 필수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은 은퇴자가 인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자금을 금융상품에 적립하고 수시로 인출하면 된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도 임의식이나 비정기연금처럼 가입자가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 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한도에 맞춰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가입자가 필요한 만큼 자유롭게 인출금액을 정할 수도 있다.

노령연금 수령기간 동안 소득공백 메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도 필요 생활비와 연금액 사이에 갭이 발생할 수 있다. 노후생활비 지출은 필수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눌 수 있다. 식비·주거비·통신비·세금·건강보험료처럼 은퇴자가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려운 것은 필수지출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여행·취미·여가비처럼 은퇴자가 지출하는 시기와 금액을 조절하기 쉬운 것은 재량지출로 구분한다.

필수지출은 종신토록 수령 가능한 연금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종신형 연금이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살아있으면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물가변동에 맞춰 연금액이 조정된다. 따라서 본인과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으로 필수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노령연금만으로 부족하다면 별도의 종신토록 소득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거주하는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종신토록 지급방식을 선택하면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물가변동에 맞춰 연금액이 조정되는 노령연금과 달리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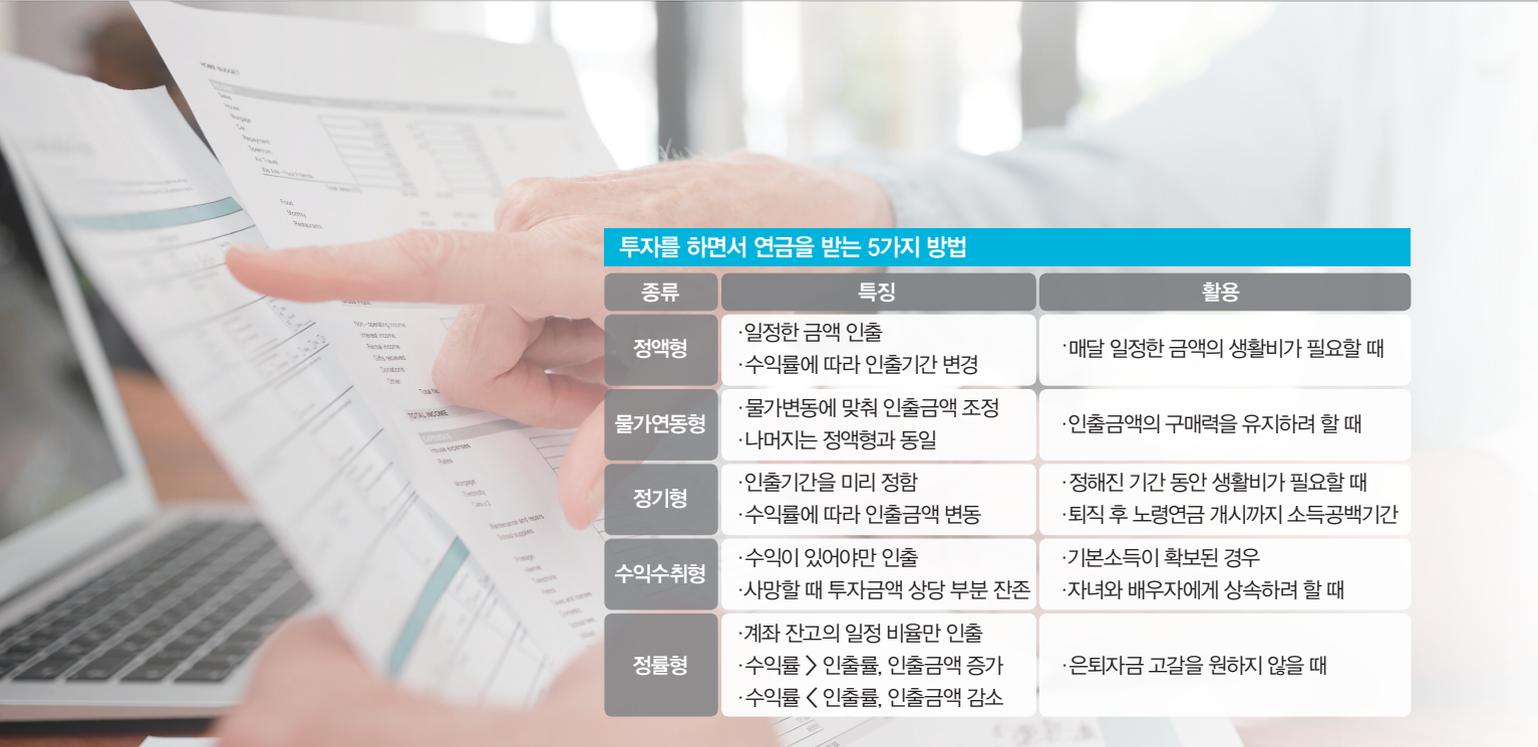
연금은 가입 당시에 연금액이 정해지면 물가변동이나 집값 등락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수령한다.

생명보험회사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연금보험 가입자는 연금수령 방법으로 종신형·확정형·상속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종신형을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연금액은 금리와 수익률에 따라 변동된다. 부부형을 선택하면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령연금·주택연금·종신형 연금보험을 활용해 필수지출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마련했다면, 다음 순서는 재량지출을 준비할 차례다. 필수지출과 달리 재량지출은 은퇴자가 인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노후자금을 금융상품에 적립하고 수시로 인출하면 된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도 임의식이나 비정기연금처럼 가입자가 필요할 때마다 자유롭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자를 하면서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률형 인출 방법을 활용하면 된다. 정률형은 계좌 잔고에서 일정한 비율만 인출하고 나머지는 재투자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은퇴자금이 3억원이고 인출률을 10%로 정했다고 하자. 그러면 첫해에는 3000만원을 찾아서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7000만원은 재투자한다. 1년 동안 5% 수익을 내면 계좌 잔고는 2억8350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2년 차에는 2835만원을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매년 남은 잔액의 일정비율만큼만 연금으로 수령하면 노후자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수익률에 따라 인출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필수지출보다는 재량지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좀 더 적합하다.

부부가 한날한시에 사망하는 일은 드물다. 그래서 연금수급자의 사망이 남은 배우자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해 봐야 한다. 자신이 먼저 사망했을 때 배우자가 수령할 수



투자를 하면서 연금을 받는 5가지 방법

종류	특징	활용
정액형	· 일정한 금액 인출 · 수익률에 따라 인출기간 변경	· 매달 일정한 금액의 생활비가 필요할 때
물가연동형	· 물가변동에 맞춰 인출금액 조정 · 나머지는 정액형과 동일	· 인출금액의 구매력을 유지하려 할 때
정기형	· 인출기간을 미리 정함 · 수익률에 따라 인출금액 변동	· 정해진 기간 동안 생활비가 필요할 때 · 퇴직 후 노령연금 개시까지 소득공백기간
수익수취형	· 수익이 있어야만 인출 · 사망할 때 투자금액 상당 부분 잔존	· 기본소득이 확보된 경우 · 자녀와 배우자에게 상속하려 할 때
정률형	· 계좌 잔고의 일정 비율만 인출 · 수익률 > 인출률, 인출금액 증가 · 수익률 < 인출률, 인출금액 감소	· 은퇴자금 고갈을 원하지 않을 때

있는 연금은 얼마나 될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주택연금·연금보험을 합쳐서 계산해 보자.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사망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계산해 보자.

노령연금 수령자 사망 이후 소득공백 메우기

노령연금 지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연금액은 사망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가 배우자에게 지급된다.

부부가 모두 노령연금을 수령하다 한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을까. 안 된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은 중단된다.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노령연금에 더해 수령한다. 예를 들어 생존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60만원이고 유족연금이 80만원이라고 해보자. 생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60만원을 수령하고,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유족연금의 30%(24만원)에 노령연금(60만원)을 더해 84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당연히 후자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연금은 어떨까. 종신지급방식을 선택하면 주택 소유자가 먼저 사망해도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 동일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담보 제공 방식에 따라 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다. 담보제공방식은 저당권방식과 신탁방식이 있다. 저당권방식 주택연금에서는 주택 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남은 배우자가 담보주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해야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다. 반면 신탁방식은 이 같은 절차 없이도 배우자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면 계약관계자를 살펴야 한다. 계약관계자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로 나뉜다.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 수익자는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다. 연금수령 방법을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면 종신형 연금보험에서 계약관계자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아무래도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상대적으로 연금소득이 적은 쪽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이 좋다.

투자를 하면서 연금을 수령하고 일부는 배우자에게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수익수취형 인출 방법을 택하면 된다. 수익수취형은 투자원금에 손을 대지 않고 운용수익만 인출하는 방법이다.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다시 원금을 회복할 때까지 인출하지 않는다. 따라서 투자원금을 상당 부분 배우자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적합한 인출 방법이다. 하지만 수익이 없거나 손실을 보면 인출할 금액이 없기 때문에 주된 소득원을 확보한 다음 보조적인 소득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M**

ETF

월 분배형 ETF 활용해 셀프연금 만들 때 꼭 챙겨야 할 포인트 5

Editor **안상혁** 미래에셋자산운용 ETF마케팅팀 팀장

■ 2022년 ETF 관련 규정이 개정되며, 국내 투자자들도 ‘월 분배형 ETF’ 투자가 가능해졌다. 월 분배형 ETF는 매달 분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공적연금이 축소되는 흐름을 보이는 시점에서는 노후생활비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할 만한 금융상품이다.

월 분배형 ETF는 일반 계좌에서도 투자가 가능하지만 연금계좌를 활용할 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일반 계좌의 경우 분배금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자가 실제 수령하는 분배금은 적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연금계좌의 경우 분배금은 과세가 이연되다가 연금으로 받을 경우 3.3~5.5%만 부과된다. 따라서 분배금을 노후생활비로 활용할 예정이라면 가급적 연금계좌 내에서 활용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2023년 2월 말 기준 국내 월 분배형 ETF는 21개로, 현재 연금계좌에서 전부 투자 가능하다. 월 분배형 ETF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유형 역시 배당주부터 회사채, 리츠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매월 분배금이 지급되다 보니, 배당주와 유사하게 자산가치 하락폭을 일정 수준 방어하는 효과도 가

지고 있어 최근과 같은 어려운 시장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장점과 인기에 힘입어 순자산 규모도 어느덧 1조 원을 넘어섰다.

이런 다양한 장점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 월 분배형 ETF를 활용해 셀프연금을 만들 때 기억하면 좋을 내용을 정리했다.

01 분배금은 언제 수령하나

현재 국내에 상장돼 있는 모든 월 분배형 ETF의 분배금 지급 기준일은 매월 마지막 영업일이며, 실제 계좌로 돈이 지급되는 지급일(입금일)은 지급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후이다. 예컨대 2023년 1월 31일이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면, 실제 분배금 지급일은 2023년 2월 2일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달 분배금을 받고 싶다면, 분배금 지급 기준일부터 최소 이틀 전에 매수 주문이 체결돼야 한다. ETF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결제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02 매월 동일한 금액이 분배금으로 지급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ETF가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금의 원천에 따라 매월 차이가 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컨대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 ETF의 경우, ETF 분배금 원천은 ETF의 구성 종목인 리츠에서 대부분 나오는데, 리츠의 배당금 지급 주기가 다르다. 그로 인해 특정 월에는 분배금을 줄 수 있는 재원이 많아 분배금이 상대적으로 높고,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분배금이 적은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반면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 ETF와 같이 분배금이 매월 일정한 수준으로 나오는 ETF도 있다.

03 분배금을 많이 주면 좋은 ETF인가

‘분배금이 많거나 분배율이 높은 ETF=좋은 ETF’라고 판단하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국내에 상장돼 있는 월 분배형 ETF는 종류가 많고, 구성 종목 또한 채권·주식·리츠 등 다양하다. 그에 따라 ETF마다 보유하고 있는 위험, ETF의 가격 변동도 제각기 다른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월 지급식 ETF에 투자하고자 한다면 아래의 2가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내가 투자하려는 ETF가 원하는 수준의 분배율을 꾸준히 낼 수 있을 것인가 ▲내가 투자하려는 ETF의 자산가치 변동을 얼마나 감내할 수 있을 것인가.

우선 내가 투자하는 월 지급식 ETF의 분배금 원천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TIGER 미국나스닥100커버드콜(합성)과 같은 커버드콜 ETF의 주요 분배금 원천은 콜옵션 매도에서 나오는 ‘프리미엄’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스닥 지수의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나스닥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는 변동성이 줄어들거나 콜옵션을 매수하는 투자자가 적어지면 콜옵션 프리미엄도 낮아지고, 그로 인해 분배금 재원도 낮아진다는 뜻이다. 반면 채권형 ETF의 경우 채권 이자가 주된 분배금 재원이고, 그 금액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채권 이자의 변동성은 작거나 없기 때문에 재원은 일정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부분은 내 노후 자산인 만큼 월 분배형 ETF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다. 예컨대 TIGER 미국 S&P500배당귀족이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ETF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환 헤지가 되어 있지 않아 구성 종목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원화 강세로 가면) ETF의 가치 또한 하락하게 된다. 전과 동일하게 분배금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ETF의 가치는 하락했기 때문에 분배율은 올라가게 된다. 즉, 동일한 금액이 입금되었지만 계좌상 전체 잔고는 하락하게 된다.

04 분배금을 찾아 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당장의 현금이 급하지 않다면, 나오는 월 분배금을 모아놔다가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해도 된다. 지급된 분배금은 없어지지 않고, 연금계좌 안에 현금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 따라서 인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MMF와 같은 단기물에 잠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05 분배금을 재투자하고 싶다면

계좌 내에 적립금에 대한 자동매수를 시행해 놓은 투자자라면, 정해진 일자에 비율에 맞춰 자동매수가 진행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ETF의 경우 현재 자동매수가 어려워 투자자가 직접 매매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매월 초 두 번째 영업일에 월 분배금이 입금되고, 해당 일자나 그 이후에 매매가 가능하다. 이때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재투자가 가능하다. 가령 ▲보유하고 있는 월 분배형 ETF를 추가로 매수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혁신 테마 등 주식형 ETF에 투자 ▲필요한 시점에 인출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단기채권 ETF나 MMF 등을 활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일부 ETF의 경우 TR이라는 단어가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TR ETF는 Total Return, 배당금을 재투자한다는 뜻이다. 배당금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대신, 분배금을 받지 못하는 상품이다. TR ETF의 장점은 ETF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을 꾸준히 재투자하기 때문에 장기 성과가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인다는 점과, 분배금에 부과되는 배당소득세 없이 그대로 재투자가 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은퇴 후 셀프연금이 필요한 시점에서는 활용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자산 증식이 필요한 노후자금 적립 시기에는 TR ETF를 중심으로 투자하다, 현금 흐름이 중요한 노후자금 인출 시기 전후로는 월 분배형 ETF로 교체하는 방법이 좋다. **M**

ETF로 채권투자 시작하려면? 만기매칭형도 살펴보세요

Editor 김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채널마케팅 본부장

개인투자자의 채권 매수세가 놀랍다. 지난해 20조원에 이어 올해 들어 6조원이 넘는 채권을 개인 투자자가 사들였다. 채권 자체가 다소 어렵고 거래도 복잡해서 그동안 채권투자는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지곤 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채권에 쏠린 이유는 무엇일까.

■ 첫째, 금리가 올랐기 때문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중금리가 1~2% 수준이라 투자자의 관심을 끌기는 역부족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금리 인상과 더불어 예금 금리가 빠르게 올랐고 채권 금리는 이보다 더 매력적인 수준으로 상승했다.

둘째,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지난해 S&P500 지수와 KOSPI 지수 모두 큰 폭 하락한 데다 올해도 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확정금리형 상품인 채권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은 더욱 커졌다.

셋째, 채권 자본 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대로 경기 침체가 가시화한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를 비롯한 세계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기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때 정점을 형성했던

금리가 하락하며 채권가격 상승, 즉 채권 자산의 자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채권투자를 쉽게 시작하는 방법

채권투자가 처음이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개별 채권보다는 채권 ETF로 투자를 시작해 보는 것이 좋다. 채권 ETF는 쉽고, 편리하며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채권투자에 입문하기에 알맞은 방법이다. 실물 채권에 비해 채권 ETF는 매매가 쉽다. 상장 주식처럼 사고 싶을 때 사고, 팔고 싶을 때 쉽게 팔 수 있다. 게다가 채권 ETF는 실물 채권에 비해 거래 비용이 낮다. 또한 다양한 채권에 분산투자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다. 어떤 채권에 투자되는지 실시간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점도 채권형 ETF의 장점이다.

다만 개별 채권은 표면 이자에만 과세되고 자본 이익은 비과세인 반면 채권형 ETF는 자본 이익과 이자소득이 모두 과세된다는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어떤 채권 ETF에 투자해야 하나

채권 ETF 투자를 결심했다 해도, 그 종류가 다양하고 많은 만큼 각각의 특성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채권 순매수 규모 비교		단위 원
구분	2022년(1월3일~3월6일)	2023년(1월2일~3월6일)
총 순매수	9088억	6조2817억
국채	1016억	1조8430억
기타금융채	1608억	2조2111억
회사채	8163억	1조5913억

자료: 금융투자협회





채권 ETF는 만기에 따라 나뉘볼 수 있다. 먼저 초단기 채권 ETF가 있는데, KOFR(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금리와 CD(양도성 예금증서) 금리를 활용하는 상품들이 대표적이다. KOFR은 국채·통안채를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환매조건부채권) 거래 금리를 의미하며, CD 금리 투자 ETF는 매일 고시되는 ‘CD 91일 금리’ 수익률을 타깃으로 하는 ETF다. 이 두 종류의 상품 모두 매일 리밸런싱을 해서 금리변동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초단기 거래이기 때문에 손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 최근 MMF 대비 성과가 높고 유동성도 좋아 투자자들의 단기자금 활용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장기 채권 ETF의 경우 3~10년 만기 국고채를 활용한 ETF가 많다. 이 ETF는 국고채에 투자하는 만큼 신용 위험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장기 채권형 ETF로는 국고채 30년물을 활용하는 ETF가 대표적이다. 금리 하락이 예상된다면 만기가 긴 ETF를 활용해 높은 자본 차익을 기대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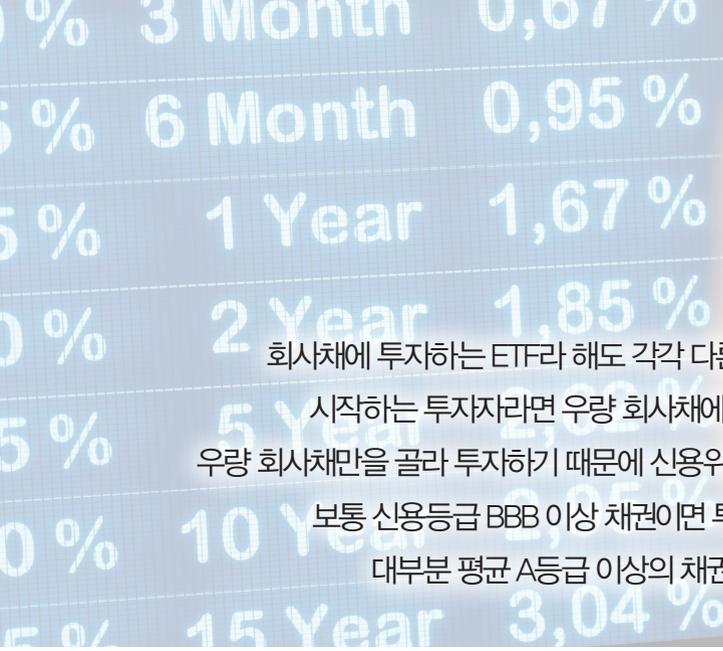
만기 외에 채권 발행 주체별로 ETF를 구분할 수도 있다. 그 경우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한국은행이 시중 통화량 조절을 위해 발행하는 통안채,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채,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ETF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라 해도 각각 다른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채권 ETF를 시작하는 투자자라면 우량 회사채에 집중투자하는 ETF를 주목할 만하다. 우량 회사채만을 골라 투자하기 때문에 신용위험은 낮고 위험 대비 수익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보통 신용등급 BBB 이상 채권이면 투자적격 채권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대부분 평균 A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는 까닭에 안정적이다.

투자 지역별로도 다양한 ETF가 있다. 최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채권형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해외 채권형 ETF는 미국달러단기채권ETF, 미국채 10년, 30년물 ETF 등이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상장되어 있는 장·단기 해외채권형 ETF의 예를 살펴보자.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ETF는 듀레이션 0.5년 이하 YTM(만기수익률) 5.3% 수준의 미국 달러 채권에 투자하는 ETF다. 이 ETF는 만기수익률 외에도 환율 변동성에 성과를 노출하도록 설정돼 달러 가치 상승(원·달러 환율 상승)시 유리한 구조다. KODEX 미국채울트라30년선물(H) ETF는 미국 국채 30년물 선물가격을 기초로 하는 S&P Ultra T-Bond Futures Excess Return Index를 기초 지



회사채에 투자하는 ETF라 해도 각각 다른 전략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채권 ETF를 시작하는 투자자라면 우량 회사채에 집중 투자하는 ETF를 주목할 만하다. 우량 회사채만을 골라 투자하기 때문에 신용위험은 낮고 위험 대비 수익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보통 신용등급 BBB 이상 채권이면 투자적격 채권으로 분류되지만 실제로 대부분 평균 A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는 까닭에 안정적이다.

수로 운용된다. 이 ETF는 환을 헤지해 환 변동성이 통제된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다만 장기 채권에 투자하는 만큼 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운용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 BBB 이하의 투자부적격 채권인 정크본드(junk bond)에 집중해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채권 ETF도 있다. TIGER 단기선진하이일드(합성 H)를 예시로 특성을 살펴보자. 미국에 80% 이상 투자하는 선진국 중심의 하이일드 ETF로, 듀레이션 2년6개월로 만기가 짧은데도 만기수익률(YTM)이 8.5% 수준으로 높다. 높은 수익률 대신 경기 침체 시 하이일드 스프레드(하이일드 채권 수익률 - 국채 수익률) 확대에 의한 손실과 신용 리스크 증가 가능성이 존재하니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채권이 주식투자보다 안정적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채권 ETF 투자에도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듀레이션 리스크다. 듀레이션이 긴 채권일수록 가격 변동폭이 크다. 즉, 상승 가능성만큼이나 하락 가능성도 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둘째, 신용 리스크다. 아무리 고금리 채권이라 하더라도 디폴트(기업 파산)가 생기면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슷한 종류의 채권형 ETF라면 운용 규모와 거래량, 환헤지, 보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보수가 낮더라도 운용 규모나 거래량이 작다면 매매시 호가 스프레드에서 보수 이상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만기매칭형 ETF의 등장

채권 ET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만기매칭형(존속기한형) 채권 ETF가 새롭게 출시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 출시된 채권형 ETF는 만기 없이 영속적으로 운용되는 대신 일정 수준의 듀레이션(만기)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운용된다. 예를 들어 국채 3년 ETF에 투자해서 1년이 경과했다라도 해당 ETF의 듀레이션(만기)은 2년으로 짧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3년으로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기매칭형 ETF는 개별채권이나 정기예금처럼 정해진 만기까지 운용되다가 만기가 되면 원금과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고 소멸(상장폐지)된다.

가령 ‘TIGER 24-10회사채(A+이상) 액티브 ETF’라고 하면 2024년 10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A+ 이상의 회사채에 주로 투자하며 비교지수 대비 높은 성과를 목표로 운용되는 액티브 ETF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국고채·은행채·회사채에 투자하는 만기매칭형 ETF가 12종가량 상장돼 거래되고 있다.

만기매칭형 ETF는 다양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만기까지 ETF를 보유하면 손실 없이 원금과 이자를 얻을 수 있다. 예금 가입 시점에 적용되는 예금 금리처럼 ETF를 만기

국내의 채권형 ETF 예시	
구분	ETF
단기	TIGER KOFR금리액티브 TIGER CD금리투자
중장기	KODEX 국고채3년 KOSEF 국고채10년
장기	TIGER 국고채30년스트립액티브 KODEX 국고채30년액티브
회사채	TIGER 투자등급회사채액티브 KBSTAR 중기우량회사채
해외	TIGER 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TIGER 미국채10년선물 KODEX 미국채울트라30년선물(H) TIGER 단기선진하이일드(합성 H)

자료: 금융투자협회

까지 보유하면 매수 시점의 만기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물론 ETF 내 편입 채권의 디폴트(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ETF에 포함된 채권 신용등급을 보면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

둘째, 쉽게 사고팔 수 있어 거래가 편리하다. 예금은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정이자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만기매칭형 ETF는 아무 때나 매도할 수 있다. 특히 매수시점 대비 금리가 하락했다면 만기 전이라도 매도해 자본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또 개별 채권에 비해 거래비용도 저렴하다.

셋째, 다양한 만기와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로 포트폴리오 관리에 유용하다. 다양한 만기의 채권 ETF를 활용해 투자 수익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 게다가 매수 이후 매도하거나 특별히 관리하지 않더라도 만기 시점이 되면 해당 ETF의 원금과 이자가 자동으로 계좌에 입금되기 때문에 관리가 편리하다.

만기매칭형 ETF 활용전략

첫째, 만기매칭형 ETF를 활용해 원금보존추구형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만기수익률 5%의 2년 만기매칭형 ETF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투자자는 2년 후 이자소득 100만원(1000만원×5%×2년)을 얻을 수 있다. 이를 응용해서 총 투자금을 1000만원이라고 할 때, 이 중 100만원을 남기고 만기매칭형 ETF에 900만원을 투자하면 2년 후 약 90만원(900만원×5%×2년)의 이자를 얻을 수 있어 대략 원금 1000만원은 보전할 수 있다. 대신 애초에 남긴 100만원을 고위험 고수익 자산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높은 수익을 추구해볼 수 있다. 혹여 큰 손실을 보더라도 최소한 원금은 지켜낸 셈이 된다.

둘째, 다양한 만기의 만기매칭형 ETF에 분산투자해 지속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6개월 단위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것처럼 6개월 단위 만기매칭형 ETF에 투자하면 예금 대비 높은 수익과 6개월 단위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만기매칭형 ETF를 파킹용 투자상품, 즉 베이스캠프 삼아 다양한 투자전략을 시도할 수 있다. 예컨대 만기매칭형 ETF에 여유자금을 파킹했다가 주식 하락 시

만기매칭형 ETF 예시(2022년 11~12월 설정)

구분	ETF
국공채	TIGER 23-12 국공채액티브 SOL 24-06 국고채액티브 HANARO 32-10 국고채액티브
회사채(은행채)	KBSTAR 23-11 회사채(AA-이상)액티브 KODEX 23-12 은행채(AA+이상)액티브 TIGER 24-10 회사채(A+이상)액티브 KBSTAR 25-11 회사채(AA-이상)액티브

자료: 금융투자협회

점마다 만기매칭형 ETF를 매도해 주식성장형 ETF를 분할 매수하면 분산투자와 저가매수(적립식 효과·Dollar Cost Average)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장·단기 바벨 전략도 고려해볼 만하다. 장·단기 만기매칭형 채권에 반반을 투자해 두고 시장금리가 오르는 일정 구간마다 단기채권 비중을 줄이고 장기채권 비중을 높이면 향후 금리 정점을 거쳐 금리 하락에 따른 추가적인 자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분산투자 효과와 더불어 혹시라도 마켓 타이밍이 좋지 못했다 하더라도 만기까지 기다리면 최소한 매수 시점의 만기수익률은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마음 편한 투자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채권형 ETF 투자는 연금저축펀드와 IRP와 같은 연금계좌에서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계좌에서는 채권 ETF의 이자와 자본 차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고 향후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M**

듀레이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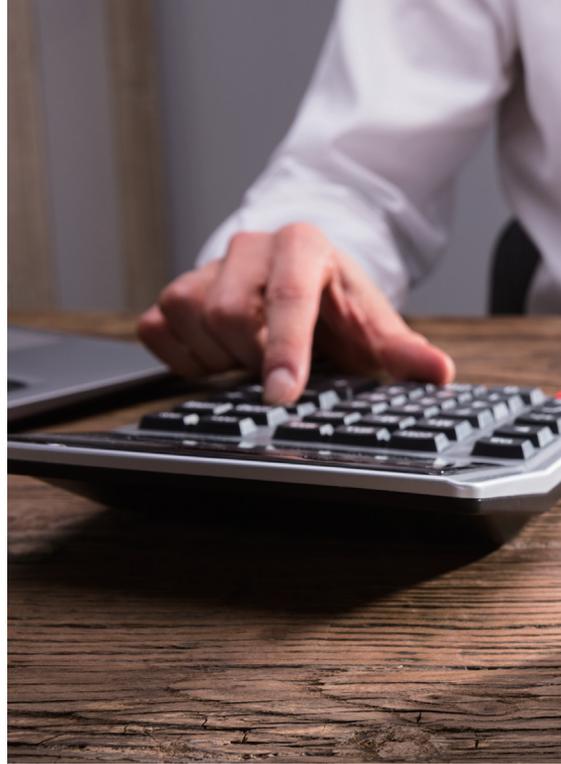
투자한 채권의 원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보통 이자와 원금의 현재가치를 반영하여 계산하는 가중평균 만기로, 만기와 유사한 개념이나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듀레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듀레이션이 길수록 채권의 가격 변화가 커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아래와 같이 듀레이션이 10년인 채권과 30년인 채권의 금리가 똑같이 1% 하락했다면 채권 수익률은 크게 차이가 난다.

$$\text{채권가격변동률} = \text{금리 증감}(\%) \times \text{채권 듀레이션}(\text{년})$$

$$10\text{년 채권 변동률 } 1\% \times 10\text{년} = \pm 10\%$$

$$30\text{년 채권 변동률 } 1\% \times 30\text{년} = \pm 30\%$$

금리 하락기에는 듀레이션이 긴 채권에 투자하면 자본 차익이 커진다. 반대로 금리가 오를 때는 듀레이션이 짧은 채권에 투자해야 자본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연금계좌로 이체한 퇴직금, 언제부터 얼마큼 받을 수 있나요?

Editor 정혜원 미래에셋투자연금센터 연구원

Q

퇴직금을 IRP로 이체한 다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감면해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절세도 좋지만 연금을 가능하면 빨리 손해 안 보면서 받고 싶습니다.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한 사람은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고 바로 연금개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금액만 수령합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는 경우에는 당장에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세금은 IRP에서 이체된 퇴직급여를 인출할 때 납부합니다. 이때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연금소득세율은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개시 이후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57세)의 퇴직급여가 2억원이고 퇴직소득세가 2000만원이라고 해보죠. 이 경우 A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됩니다. A씨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2000만원을 떼고 1억8000만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2억원이 전부 IRP에 적립됩니다.

세금은 IRP에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 납부합니다. A씨가 연금수령 한도 이내에서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를 부과합니다.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율(10%)의 70%에 해당하는 7%, 11년 차부터는 퇴직소득세율의 60%에 해당하는 6%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연금 외 수령'으로 봐서 퇴직소득세율(10%)을 그대로 적용해 과세합니다.

$$\left\{ \text{연금수령 한도} = \frac{\text{연금계좌 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right\}$$

연금수령 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과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금계좌 평가액을 (11-연금수령연차)로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한 금액의 120%까지 그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연차'는 어떻게 적용할까요? 2013년 3월 1일 이후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해있는 해가 '1년차'가 됩니다. 본래 연금계좌 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한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들어보죠. B씨가 54세에 퇴



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고 만58세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1년차'는 언제 시작될까요? B씨가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한 54세가 1년차일까요, 아니면 연금수령을 개시한 만58세가 1년차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만55세부터 1년차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한 만58세는 4년차가 적용됩니다.

그러면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계좌에 가입한 경우에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해를 '6년차'로 간주합니다. 앞서 B씨가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연금계좌에 가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55세에 6년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수령 개시 신청을 한 만58세는 9년차가 적용됩니다. 2013년 2월 28일 이전에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급여를 전부 연금계좌로 이체한 경우에도 연금수령연차를 '6년차'부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연금계좌 평가액을 산출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개시 신청을 한 해에는 신청한 날 계좌 잔고를 평가액으로 봅니다. 이듬해부터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금계좌 평가액을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C씨(57세)는 2022년 12월 1일 퇴직급여 2억원을 새로 개설한 IRP에 이체하고 즉시 연금을 개시했습니다. C씨는 2014년 1월에 퇴직연금에 가입했습니다.

이 경우 1년 차 연금수령 한도는 연금개시신청 당일 계좌잔고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IRP에 퇴직급여 이외 다른 돈이 없으면 연금계좌 평가액은 2억원이고, 이를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하면 2400만원이 됩니다. C씨는 연금개시

A씨(57세)의 퇴직급여가 2억원이고 퇴직소득세가 2000만원이라고 해보죠. 이 경우 A씨의 퇴직소득세율은 10%가 됩니다. A씨가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면 세금 2000만원을 떼고 1억8000만원을 손에 쥐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IRP에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2억원이 전부 IRP에 적립됩니다.

신청을 한 2022년 12월 1일부터 그해 말까지 한 달 동안 최대 2400만원을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left\{ \text{1년 차 연금수령 한도} = \frac{2\text{억원}}{(11-1)} \times 120\% = 2400\text{만원} \right\}$$

2년 차부터는 매년 1월 1일 연금계좌 평가액을 기준으로 연금수령한도를 계산합니다. 앞의 사례에서 C씨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300만원을 인출하고, 적립금을 운용해서 1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1월 1일 IRP에 1억9800만원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를 기준으로 연금수령 한도를 계산하면, C씨는 2023년에 최대 2640만원을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left\{ \text{2년 차 연금수령 한도} = \frac{1\text{억}9800\text{만원}}{(11-2)} \times 120\% = 2640\text{만원} \right\}$$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할 수도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한 금액에는 퇴직소득세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세금을 산출합니다. 앞에서 예로 든 C씨가 1년 차에 3000만원을 인출했다고 해보죠. 이때 연금수령 한도에 해당하는 2400만원까지는 연금수령으로 보고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소득세율로 과세하지만, 나머지 600만원은 연금 외 수령으로 봐서 이보다 높은 퇴직소득세율로 과세합니다. **M**



ISA 활용 소액 채권투자, 비과세 혜택 '듬뿍'

Editor 이규성 미래에셋투자증권센터 연구원

■ 올해 3월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실물 채권투자가 가능해졌다. 종전에는 채권형 펀드나 채권 ETF로 채권을 간접적으로 보유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ISA에서 실제 채권을 직접 보유할 수 있게 됐다.

모든 ISA에서 채권매매 할 수 있나

모든 ISA계좌에서 채권 매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ISA는 운영형태에 따라 중개형·신탁형·일임형 ISA로 구분된다. ISA를 통해 채권에 투자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중개형을 선택해야 한다. 채권투자와 같은 직접투자가 가능한 계좌는 중개형 ISA이기 때문이다. 중개형 ISA는 상장주식과 리츠, ETF, 공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취급한다. ISA에서의 채권투자는 일반위탁계좌에서 채권을 거래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편리하게 채권을 매매할 수 있다.

중개형 ISA에 투자 가능한 채권 종류는?

ISA에서 투자 가능한 채권은 장내·장외 채권 등이며, 기존

기업어음(CP) 시장을 대체한 단기금융시장의 채권(단기사채) 등도 포함된다. 주로 국채, 지방채, 공공기관 채권, 신용등급이 높은 회사채 및 ABS(자산유동화증권)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외화 채권은 가능하지 않다. 제시되는 채권의 이자율은 채권의 만기와 신용도에 따라 다른데, 대체로 시중은행 예금 금리보다 높은 편이다.

채권은 거래 단위가 커서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ISA에서 거래할 수 있는 채권은 거래 단위가 1000원인 경우도 많다. 소액 국공채가 대표적인 예이다.

ISA에서 채권 매매 시 유의할 점은?

첫째는 회사채의 신용도가 하락할 경우 채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 발행자의 신용도가 떨어지면 채권의 시장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나 채권은 부도가 발생하지만 않으면 정해진 약정 이자는 계속 지급되기 때문에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원금과 이자에 대한 현금 흐름에는 문제가 없다. 둘째는 채권 만기에 유의해야 한다. 투자하는 채권 만기가 ISA 만기보다 긴 경우 ISA 만기일까지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일반과세 처리된다. 이 경우에는 ISA 만기일 전에 ISA 계약 만기를 연장해 세제혜택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물론 ISA 만기일 전에 채권을 매도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채권매매 시장 특성상 채권은 상장 주식과 달리 매수와 매도 호가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어 보유한 채권을 내재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팔아야 할 때가 있다. 따라서 ISA에서 채권투자를 할 때는 ISA의 만기보다 짧은 만기를 가진 채권을 매수해 예금에 저축하듯이 만기 때까지 보유하는 전략이 적합하다.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하고 싶다면 ISA 만기를 그만큼 길게 설정해 놓거나 ISA 만기를 지속해서 연장해 나가야 ISA의 세제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 **M**

ISA는?

ISA는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최대 200만원(서민형 ISA 최대 400만원)까지 제공한다. 또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ISA를 잘 활용하면, 이자·배당수익에 대한 절세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ISA는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ISA를 만들 수 없다. ISA의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의무가입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해도 납입원금은 자유롭게 출금 가능하다. ISA 의무가입기간이 경과해도 바로 해지할 필요 없이 얼마든지 계좌를 유지할 수 있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대비할 수 있어

Editor 박창영 미래에셋생명 GA영업지원팀 선임매니저

Q

10년 후 은퇴를 계획 중인 50대 A씨. '노후자금을 어떻게 모아야 하나'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구 B씨가 은퇴 후 금융소득이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하고 싶은 A씨, 노후자금도 모으되, 은퇴 후 금융소득이 문제 안 될 방법은 없을까 고민입니다.

A 2022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이 시행되고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례가 늘고 있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 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은 연간 소득 2000만원 초과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 초과 또는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5억4000만~9억원에 해당되며 연간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여기서 연금소득의 경우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에는 소득 전액으로 판단하고 건강보험료 산출 시에는 연금수령액의 약 50%만 반영한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직장인이라 해도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그간 납부하지 않던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부동산이나 연금소득 등의 자산은 조정하기가 쉽지 않다. 대신 예금 이자나 배당금 등 유동적인 금융소득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고, 미리미리 비과세 금융상품으로 준비해 둔

다면, 은퇴 후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저축성 보험은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하는 수익 전체에 대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 조건

저축성 보험은 소득세법상 10년 이상 보험기간을 유지하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보험 차익 소득 또한 건강 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된다.

저축성 보험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험료를 5년 이상 납입해야 하며, 매월 납입보험료(기본보험료+추가납입보험료)는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는 균등해야 하며,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일시납 저축성 보험은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계약자 1명당 보험료 합계액이 1억원 이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2017년 3월 이전까지 체결한 보험계약은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이후 체결하는 보험계약은 1인당 1억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10년 이상 장기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월 납입보험료 150만원 또는 일시납 보험료 1억원을 초과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종신형 연금보험은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 형태로만 보험금을 수령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가 동일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보험계약과 연금지급재원이 소멸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금액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M**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펀드에 투자하고, 소득공제도 받고...

Editor 이종근 미래에셋투자자산연구소 연구원

■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으로 청년들의 자산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계속되는 변동성 장세로 젊은 층의 자산 형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의 고민을 줄여주기 위해 출시된 금융상품이 있다. 바로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청년소장펀드)다. 청년 소장펀드는 가입 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중 일부를 소득 공제해 주는 펀드 상품으로 일정 소득 이하 청년층에 혜택이 주어진다. 청년소장펀드의 가입 조건과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 다른 세제혜택 상품과 비교했을 때 청년소장펀드의 장단점은 무엇일까.

소득 조건 갖춘 청년은 총 3600만원 납입 가능

청년소장펀드는 만 19~34세(6년 한도로 병역복무기간 배

제)인 동시에 가입일 기준 직전 과세연도의 총 급여액이 50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여야 가입 가능하다. 만약 직전 3개 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할 수 없다.

가입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이는 매수 신청일이 아닌 펀드 결제일 기준이다. 따라서 매수 신청부터 결제일까지 소요기간은 사전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납입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다. 최장 5년 동안 최대 6년 납입할 수 있어 최대 총 36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여러 청년소장펀드에 가입할 수도 있지만, 연간 납입 한도는 합산 금액으로 계산된다.

청년소장펀드는 연간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해 준다. 예컨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600만원의 40%)을 소득공제 받게 된다. 이 경우 그해 연말정산 시 약 15만8000원(240만원×6.6%) 또는 39만6000원(240만원×

16.5%)을 기납부 세액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과세표준 연소득 1400만원 이하 구간일 경우 주민세 포함 종합소득세 6.6%, 1400만~5000만원 구간일 경우 16.5%의 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소득공제는 납입 1년 차부터 받을 수 있지만 최소 3년 이상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개요	
구분	내용
가입조건(나이)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배제)
가입조건(소득)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가입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가입 기한	2023년 12월 31일까지(펀드 결제일 기준)
소득공제 혜택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소득공제 배제	총급여액 80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6700만원 초과 시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
원금 보장 및 예금자 보호 여부	해당 없음

청년소장펀드와 IRP·연금저축·ISA 비교

	세제혜택	의무가입기간	투자 가능 상품
청년소장펀드	- 연 납입 한도 600만원 -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 최대 5년	3년	청년소장펀드
ISA	- 이자·배당소득 중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초과분 9.9% 분리과세	3년(납입원금에 한해 중도 인출 가능)	예·적금, RP, 공모 펀드, 국내성장주식/ ETF/리츠, K-OTC 거래 비상장 주식(중소·중견기업), 채권 파생결합증권 등
IRP	- 연 납입액의 16.5%(또는 13.2%) 세액공제(900만원 한도) - 연금수령 시 이자·배당소득 저율 과세	5년, 55세 이후 연금수령	예·적금, 원리금보장 ELB, 이율보증보험, 공모펀드, 국내성장ETF/리츠
연금저축펀드	- 연 납입액의 16.5%(또는 13.2%) 세액공제(600만원 한도) - 연금수령 시 이자·배당소득 저율 과세	5년, 55세 이후 연금수령	공모펀드, 국내성장ETF/리츠

은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그 전에 환매(일부 매도 불가)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 내에서 납입액의 6.6%만큼을 과세한다. 가입기간 중 총 급여액이 8000만원(또는 종합소득 6700만원)을 초과하면 그해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른 절세상품들과의 세제혜택 및 요건 비교

IRP와 연금저축은 저축금액에 세제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청년소장펀드와 유사하다. 다만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납입액의 16.5%(또는 13.2%)를 환급해 주며 세액공제 한도는 IRP와 연금저축 합쳐 900만원이다. 또한 펀드뿐 아니라 국내 상장 ETF, 리츠, 보험 등 더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또 발생한 수익에 대해 즉시 과세하지 않고 연금수령 시 저율 과세한다. 하지만 세제혜택을 온전히 받으려면 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축적된 자금을 55세 이상의 나이에 10년 이상 기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해야 한다.

ISA 역시 대표적인 절세 상품 중 하나다. 이 상품은 납입금에 대한 공제혜택이 아니라,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이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선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ISA는 IRP와 연금저축보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으로 청년소장펀드와 같지만 납입원금에 한해 중도 인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IRP와 연금저축과 비교했을 때 청년소장펀드는 의무가입

기간이 비교적 짧아서 단기간 목돈을 마련하려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따라서 3년 정도의 투자기간을 예상하고 있다면 ISA 비과세 혜택과 청년소장펀드의 소득공제 혜택 가운데 어떤 것이 더 큰지 비교해 보고 선택하면 된다.

청년소장펀드 가입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어떤 펀드에 가입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청년소장펀드는 기본적으로 자산 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 또는 국내 상장 주식형 펀드를 편입해야 한다. 나머지는 펀드 전략에 따라 다양한 자산을 편입할 수 있다.

투자성향이 공격적이라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일부 채권에도 분산투자하는 혼합형 펀드가 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별 분산투자가 되어 있는 펀드를 찾는다면 해외 주식에도 투자하고 있는지, 어떤 국가에 투자하는지 파악해야 한다.

본인 투자성향에 따라 성장주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 배당주 위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고를 수 있다. 관심 있는 특정 테마와 관련된 기업에만 투자하는 펀드를 선택할 수도 있다.

성과를 점검하고자 한다면, 선택하고자 하는 청년소장펀드와 유사한 혹은 완전히 동일한 운용전략을 따르는 기존 일반 펀드를 참고해볼 수 있다. 펀드 간의 운용성과뿐 아니라, 운용사 자체의 역량을 따져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다만 과거 수익률이 미래에도 보장된다는 법은 없으니 참고 정도로만 활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수 및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도 비교해 봐야 한다. **M**

노후가 풍족해지는 나만의 비법 이제 연금이 쉬워집니다



매주 **뉴스레터**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절세

개인연금

ETF

리츠

자산배분

연금화

퇴직연금

TDF



GLOBAL SENIOR STORY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 문제를 고민해 온 선진국들의 시니어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기술과 조직,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시니어들의 행복을 추구하고, 더 나은 삶을 고민하는 선진국들의 모습들을 살펴봤다

미국 '스마트웃' 입은 치매환자,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 수 있다

일본 인생의 끝, 준비하지 않으면 '웰다잉'은 없다

독일 요양시설 짓기보다 주거환경 바꿔 행복지수 높인다





미국편

‘스마트 옷’ 입은 치매환자,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 수 있다

치매노인과 가족 간병인 돕는 최신 기술제품 네 가지

Editor 이경원 텍사스주립대 교수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치매로 고생하는 사람이 5000만 명이 넘는다. 그 수는 2030년 8200만 명, 2050년에는 1억5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인구 증가라는 전 세계적 추세로 인해 가족 간병인들이 짊어진 책임과 고충, 어려움들을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가족 간병인은 치매에 걸린 가족을 보살피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담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겪은 코로나는 나이·성별·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지만 특히 치매환자들과 간병인에게 미친 영향은 심각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와의 접촉이 줄어들고 야외활동이 중단되면서 치매환자들은 인지, 행동, 일상생활 기능 수준 저하를 보였다. 지역사회 및 장기요양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기간이 길어지고, 치매센터가 문을 닫으면서 치매 가족 간병인들 또한 정서적 스트레스 등 어려움을 호소했다.

하지만 소득도 있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많은 연구인들과

치매 전문의들은 치매 간병에 원격 의료, 비디오 및 전화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다양한 기술이 가족 간병인뿐만 아니라 치매환자들을 돌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은 소소하지만 반복적인 간병 활동을 돕는 것들이 많아, 늘 치매 부모님 곁에 붙어있어야 하는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의 숨 쉴 틈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네 가지 기술을 소개한다.

1 치매환자 밀착 모니터링하는 ‘스마트 옷(Smart Clothes)’

‘스마트 옷’은 일상생활 활동 척도를 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컨대 치매환자의 걸음 수, 위치, 밤에 일어나는 횟수, 자세, 외출 시간 등을 모니터링한다. 집에서 지내는 치매환



스마트 베스트(smart vest)를 입고 침대기기에 연결해 건강 점검 후 결과를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스마트베스트)



프로젝트 라이프세이버의 구조 직원이 라이프세이버 제품을 착용한 치매 노인을 GPS 수신기로 찾는 시범을 보이고 있다.(프로젝트 라이프세이버)

자의 경우 가족 간병인의 감독 없이 집을 떠나려는 시도를 하는지,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있다. 길을 잃어 헤매고 있을 때 위치를 추적할 수 있고, 밤에 일어나는 빈도수 등을 체크하면서 환자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정보들이 해당 스마트폰 앱에 저장되기 때문에 의료진과 공유할 수 있고, 나아가 간병 지원을 강화하는 데 참고가 된다.

대만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환자에게 스마트 옷을 24시간 착용하게 하고, 그들의 생활 정보가 간호사의 스마트폰 앱에 전송되도록 설정했는데, 이를 통해 간호사는 치매환자들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게 됐고, 추후 어떤 간병 활동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예측할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이를 통해 가족들은 치매 가족 간병에 있어 실제적인 도움을 얻고 있다.

2 약 복용 챙겨주는 알람 '리마인더 로지(Reminder Rosie)'

대부분의 치매환자는 인지기능을 위한 약물부터 시력 관련 또는 몸 떨림 방지 약까지 여러 가지 약물을 복용하게 된다. 어떠한 약은 취침 직전에 먹어야 하고, 어떤 약은 아침 공복에 먹어야 하는 등 복잡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가족 간병인이 매일 옆에서 챙겨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물 관리, 특히 기억력으로 고생하는 치매환자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최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물 섭취 시간을 알려주는 알람에서부터 제 시간에 적정 약을 내보내는 전

'스마트 옷'은 일상생활 활동 척도를 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컨대 치매환자의 걸음 수, 위치, 밤에 일어나는 횟수, 자세, 외출 시간 등을 모니터링한다. 집에서 지내는 치매환자의 경우 가족 간병인의 감독 없이 집을 떠나려는 시도를 하는지, 거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있다.

자 약물통까지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가령 '리마인더 로지'라는 제품은 가족 간병인이 스스로 최대 25개의 음성 메시지를 녹음하고 일정 시간에 녹음이 켜질 수 있도록 예약할 수 있는 핸드프리 알람 기계다. 예를 들어 1시가 되면 "아빠, 오후 1시예요. 지금 빨간 알약 2개와 파란 알약 1개를 드세요"라고 자녀들의 목소리가 플레이 되는 식이다. 익숙한 목소리로 알람을 듣게 되면 치매환자가 마음의 위안을 얻게 돼 실제로 잊지 않고 약을 먹게 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알람 설정 시 약물과 관련한 메시지뿐만 아니라 병원 방문, 생일, 가족 방문 등과 같은 일정에 대한 알람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전반에 도움이 된다.



약 복용 시간 등 치매 노인을 위해 알람으로 할 일을 알려주는 리마인더 로지.(SMPL 테크놀로지)

‘라이블리’는 초반에 복잡한 핸드폰 기능을 단순화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전화·문자·사진 등 소수의 기능만 탑재했다. 이후 여기에 노인과 간병인들을 위한 건강·의료·안전 앱을 추가하고, 콜센터 긴급 대응 상담 서비스까지 더하면서 대표적인 노인 건강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미국에서 90만 명 넘는 노인이 이 제품을 사용 중이다.

3 치매 노인에 최적화된 휴대전화 ‘라이블리(Lively)’

‘라이블리’는 의료 경보 기기이자 대부분의 서비스가 스마트폰과 유사한 제품이다. 노인들을 위한 스마트폰 인터넷 및 통화 플랜도 제공하고 있다. 라이브리의 역사는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반에 라이브리는 노인 친화형 휴대전화로 시작했다. 복잡한 핸드폰 기능을 단순화해 노인들에게 필요한 전화·문자·사진 등 소수의 기능만 탑재한 것이다. 단순화된 메뉴 및 대형 아이콘을 통해 노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를 시작으로 2015년 12월 노인과 간병인들을 위한 건강·의료·안전 앱을 추가하고, 콜센터 긴급 대응 상담 서비스까지 더해지면서 노인 건강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미국에서 90만 명 넘는 노인이 이 제품을 사용 중이라고 한다.

라이블리는 기존 스마트폰에 라이브리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고, 라이브리 노인 친화형 휴대전화를 별도로 구매해 쓸 수도 있다. 라

라이블리 제품과 스마트폰 연동 예시.(라이블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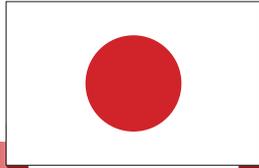


이블리 노인 친화형 휴대전화는 증폭 스피커가 있어 청력이 좋지 않은 노인이 보다 쉽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 경보 기계(목걸이형)는 치매환자들의 GPS 위치 추적뿐만 아니라 활동 모니터링, 넘어짐 감지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사용자가 넘어지는 등 비상상황이 벌어질 경우, 버튼을 누르면 비상 대응 콜센터 직원과 바로 연결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계 자체가 방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노인의 넘어짐 빈도수가 높은 화장실, 샤워 부스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4 길 잃어도 걱정 끝! ‘프로젝트 라이프세이버(Project Lifesaver)’

손목에 팔찌처럼 차는 이 기계는 무선 주파수를 사용해 길을 잃은 노인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는 이 기계에서 전송하는 무선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치매환자가 보호자 없이 집에서 나와 방황할 경우 가족 간병인이 이를 신고하면, 경찰은 팔찌가 전송하는 무선 신호를 사용해 그들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예컨대 뉴욕의 웨스트체스터 카운티(Westchester County)는 ‘모두가 살기 좋은 커뮤니티 구축’이라는 모토 아래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관에게 치매환자에 대한 교육까지 시키고 있다. 프로젝트 라이프세이버의 한 담당자는 “프로젝트 라이프세이버는 치매환자의 안전을 위한 기이지만, 결국 간병인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말했다.

치매환자가 방황하고 길을 잃는 경우, 간병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보통이 아니다. 치매환자가 집 안에서 넘어지거나 약을 먹는 시간 등을 놓치게 될 경우 간병인은 본인이 간병활동을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죄책감으로 마음고생을 하기도 한다. 때문에 가족 간병인이라면 매년 개발되고 또 개선되고 있는 다양한 성능의 기기들에 관심을 가질 만하다. 환자를 위해, 간병인 스스로를 위해, 이런 기술에 대한 정보를 알고 이용해 간병활동의 부담을 덜 필요가 있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타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기술의 혜택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M**



일본편

인생의 끝, 준비하지 않으면 ‘웰다잉’은 없다

日 액티브 시니어의 주체적 죽음 맞이 ‘종활(終活)’ 10년

Editor 김웅철 매일경제TV 국장·전 매일경제 도쿄특파원·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저자

■ 노인 대국 일본에는 팔순(八旬)이 넘은 어르신이 1230만 명이나 된다. 200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이후 17년이 흘렀기 때문이다. 나이 든 사람이 많다 보니 사망자 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22년 기준 연간 사망자 수가 14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일본 언론에서는 ‘다사(多死)사회’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사망자가 많아지면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변하기 마련이다. 2025년 한국도 ‘어르신’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일본처럼 죽음이라는 인생사가 남의 일이 아니다.

주체적 죽음을 위한 ‘종활’의 등장

일본에서는 웰다잉 대신에 ‘종활(終活, 일본어 발음 ‘슈카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종활이란 마지막이라는 뜻의 ‘종(終)’에 활동의 ‘활(活)’을 조합해 만든 조어다. 위키피디아는 종활을 ‘인생의 끝을 위한 활동’이라는 의미로, 사람이 스스로의 죽음을 의식하면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와 이와 관련한 삶의 총괄 활동’으로 정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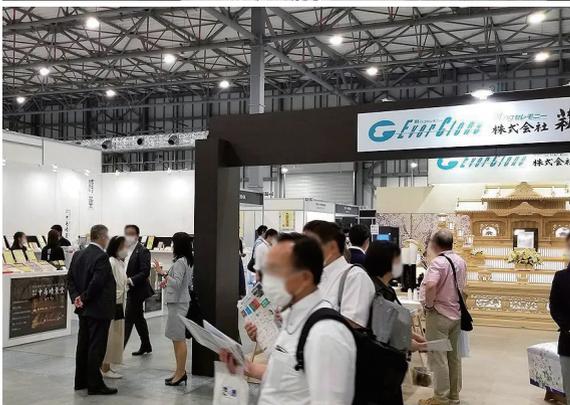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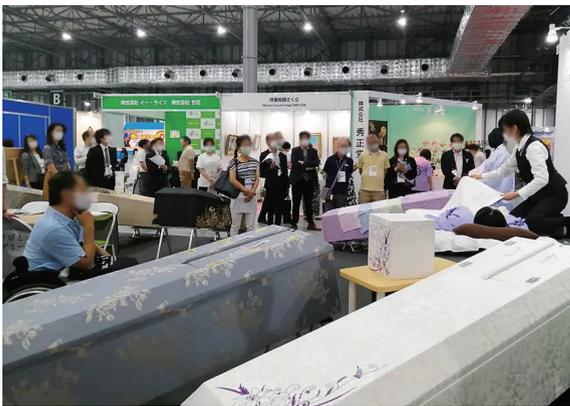
종활이라는 말은 2009년 여름 주간아사히(週間朝日)가 ‘현대 종활(終活) 사정’이라는 연재 기사를 게재하면서 대중에게 첫 등장한다. 연재 초기에는 주로 장례나 장묘에 관한 정보와 사전 준비 요령이 담겼다가 후반에는 죽음 준비를 넘어 현재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준비로 개념이 확장됐다.

2011년 3월, 2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동북대지진의 참사는 일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죽음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해에 종합카운슬러협회 등 다양한 단체가 출현했고, 이들 단체를 중심으로 각지에서 종활 강좌가 생겨났다. 정부(경제산업성)도 ‘안심과 신뢰가 있는 라이프엔딩 스테이지 창출을 향해(2011년)’라는 보고서를 내면서 웰다잉 관련 서비스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후 종활은 상속·재산정리·연명치료·간병·치매·유품정리까지 폭넓게 끌어안으면서 범위를 넓혔고, 2015년에는 관련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은 엔딩산업전(ENDEX·Ending Expo)이 성황리에 개최되면서(200개 사 참여, 2만 명 방문), 비즈니스로서의 가능성을 확인시켰다.

종활 4대 부문: 여생설계, 생전정리, 장례·장묘준비, 엔딩노트

종활은 여생의 생활설계, 생전정리, 장례·장묘의 준비, 엔딩노트 작성 등 4대 부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생(餘生) 생활설계’는 종말기 거주형태, 즉 자택에서 보낼지 고령자 시설에서 보낼지 결정해 두고 준비하는 것이다. 간병·돌봄에 대한 희망, 연명치료에 대한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두는 것도 포함된다.

‘생전(生前)정리’는 재산이나 소지품 정리, 상속 재산 처분 등이 해당한다. 유연장 작성이 중요한 활동이다. 최근에는 디지털 유품 처리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어떤 장례식을 원하는지, 장례식에 누구를 부를 건지, 묘지와 묘



석, 수의, 영정사진 등은 어떻게 할 건지는 종활의 대표 항목이다. '엔딩노트'는 종활의 모든 부분에 관여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종활 계획서로서 중요한 활동이다. ▲본인의 정보 ▲가족·친척·친구 정보 ▲의료·간호에 관한 희망 ▲재산 정보 ▲장례·매장 희망 ▲기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 등을 기록한다.

생전계약, 축구공 유골함, 데스크페 다양해진 종활 트렌드

종활의 확산은 일본 고령자들의 죽음 관련 라이프스타일을 바꿔가고 있다. '생전계약(生前契約)'이라는 게 있는데, 자신의 사후에 필요한 수속, 절차 등을 살아있을 때 미리 계약해 두는 것을 말한다. 독거노인이 생전에 장례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자신의 사후절차를 위탁하는 것이다. 장례뿐만 아니라 신원보증이나 재산관리에서부터 안부 확인이나 간병과 같은 일상생활도 서포트해 준다.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은 2020년 4월부터 '1인 신탁'이라는 생전계약 신탁상품을 선보였다. 돌봐줄 가족과 친인척이 없는 독신자를 대상으로, 생전에는 주로 안부 확인, 사후에는 엔딩노트에 기재된 희망에 따라 서비스한다. 수탁금액은 300만 엔 이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령자가 주요 고객이다. 유통그룹 '이온은' 2016년부터 '이온 라이프'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온 센터가 가족을 대신해 신원보증인이나 긴급 연락처 응대를 맡고, 긴급 입원 시 절차를 대행해 준다. 종활 사이트 가마쿠라신쇼(鎌倉親書)의 '좋은 생전계약 서비스'는 기본요금 25만 엔 정도의 저가형 서비스로 보험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반납과 사망신고, 납세나 연금 신고, 부고 연락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고인이 사랑했던 풍경사진을 코팅한 관, 축구를 유난히 좋아했던 고인을 기려 만든 축구공 유골함, 고인이 좋아했던 보석으로 수놓은 서양식 여성 수의(壽衣), '에필로그 드레스'도 인기가. 에필로그 드레스는 1500만~2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다.

타워형 납골당의 등장도 종활

ENDEX 2022 전시회에는 유골함, 영구차, 제단 장식품 등 다양한 장례식 관련 상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참여했다.(ENDEX JAPAN)

이 낡은 비즈니스다. 이 납골당은 주차빌딩처럼 번호나 카드를 대면 타워에 비치된 납골이 참배 부스로 자동 이동되면서 참배를 하는 방식이다. 핵가족화로 가족묘가 사라지고, 후대에 조상 묘지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 '납골 빌딩'을 출현시켰다.

일본에서는 같은 장소에 납골묘를 마련한 고령자끼리 교류하는 사람을 '묘 친구(墓友)'로 부르는데, 저세상을 함께 준비하는 동창생쯤 된다. 묘 친구들은 매년 벚꽃이 필 즈음 한자리에 모여 시를 낭송하거나 애도식을 갖고 먼저간 고인의 명복을 빌어준다. 카페에서 커피나 다과를 즐기면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스 카페(Death Cafe)도 있다. '죽음 준비 교육장'인 썸인데, 이 같은 죽음 커뮤니티가 2011년 동북대지진 이후 많이 늘어났다고 한다.

지자체의 엔딩플랜 서포트 사업

다사사회가 본격화하면서 간병과 함께 임종(죽음)도 사회가 떠안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15년 초 요코스카(横須賀)시에서는 고독사한 노인이 남긴 쓸쓸한 '생전 편지'가 공개되면서 충격을 줬다. 시는 그해 7월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독거 고령자를 대상으로 사후 절차를 지원하는 '엔딩플랜 서포트 사업'을 시작했다. 시청에 담당창구를 두고 고령자의 희망에 따라 장례업체와 생전계약을

타워형 납골당의 등장도 종황이 낡은 비즈니스다. 이 납골당은 주차빌딩처럼 번호나 카드를 대면 타워에 비치된 납골이 참배 부스로 자동 이동되면서 참배를 하는 방식이다. 핵가족화로 가족묘가 사라지고, 후대에 조상 묘지 관리를 기대하기 힘든 현실이 '납골 빌딩'을 출현시켰다.

체결하도록 중개해 준다. 비용은 20만6000엔 정도. 시는 장례업체에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야마토시(大和市)는 1인 세대 종황을 지원하는 전용 창구를 설치하고 종황 컨시어지(집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종황 컨시어지는 장례·납골 이외의 방 정리나 유품 정리, 상속 재산 처분 등 다양한 상담을 한다.

일본 종황의 등장 배경인 가족 관계의 소원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죽음에 대한 인식의 변화, 독거 고령자의 증가 등은 한국의 현재이기도 하다. 최근 국내에서 웰다잉을 통한 주체적인 죽음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일본의 종황이 참고 사례가 될 만하다.M



요코스카시의 엔딩플랜 서포트 사업 팸플릿 표지 <혼자 살아서 장례나 봉안(납골) 등이 걱정되는 분에게>.(요코스카시 시청)

종황 관련 강연 중인 종황가운슬러협회 무토오 요리코 협회장. (종황가운슬러협회)





독일편

요양시설 짓기보다 주거환경 바꿔 노인들의 행복지수 높인다

독일 뮌헨시의 노인 복지제도 개혁 프로젝트

Editor 김수민 독일 베를린대학 박사과정

■ 독일 남부에 위치한 대도시 뮌헨은 시니어들을 위한 요양시설을 일컫는 플레게하임(Pflegeheim)이 충분히 갖추어져 독일 내에서도 노인 복지 수준이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걸음 더 나아가 뮌헨에서는 최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요양시설 확충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노인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한 새로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업그레이드 된 주거시설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하고 있다.

아무리 최신식 시설이 마련돼 있더라도 기꺼이 요양원에 들어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자 하는 노인들이 몇이나 될까. 섣뉘 자신이 익숙하게 살던 집과 가족을 떠나기는 그 누구에게도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몸이 아프고

쇠약해진 상태일지라도 자신이 줄곧 생활하던 주거환경을 벗어나 낯선 곳에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일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인식의 확산은 오랜 기간 행해진 노인 복지를 위한 방안들 중 하나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도시형 요양시설을 새롭게 바라보도록 하는 계기가 됐다.

뮌헨에 거점을 둔 적록연정(grun-rote Koalition,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연립정부)에 속한 시의회는 최근 요양원 등 노인 복지시설을 늘리는 방안보다는 노인 요양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기획과 특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뮌헨 시민들 사이에서 노인 복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들이 생겨났고, 그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요구들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뮌헨의 깨어있는 시민연대

뮌헨 시의원 소피 랑마이어(Sofie Langmeier)는 뮌헨시의 노인 복지에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녹색당 분홍리스트의 일원이기도 한 그녀는 베이비부머 세대로서 이미 나이 든 세대에 속하지만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며 현재 노인 문제 해결에 동참 중이다.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노인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녹색당 분홍 리스트(Gruenen/Rosa Liste)는 뮌헨 시청과 시의회에 속해 있으면서 자발적인 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시민연대로, 노인 문제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또 다른 시민연대인 시민당 볼트 도시개혁 연대(SPD-Volt Stadtratsfraktion) 의장을 맡고 있는 안느 휴브너

녹색당 분홍리스트 일원인 뮌헨시 시의원 소피 랑마이어, 노인 삶의 질 개선과 자율성 보전,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그 가족을 위한 좋은 돌봄, 간병인의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고 있다.
(녹색당 분홍리스트 홈페이지)

시민당 볼트 도시개혁 연대 안느 휴브너 의장, 노인들이 빈곤과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활동 중이다.
(시민당 볼트 도시개혁 연대 홈페이지)





최근 독일에서는 요양시설보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과 익숙한 동네에 머물고자 하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요양시설 확충보다는 노인 거주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늘고 있다.

(Anne Hubner) 역시 2020년 뮌헨시에서 도입한 '시니어 주거지 개혁'이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한 점을 비판

하고 있다. 주거 양식 및 형태의 개혁을 시도한 이 프로젝트는 진정 노인들이 자신이 사는 곳에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했기에, 성공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패인을 분석했다. 소통 없이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노인들의 주거문제에 접근해서는 노인 개개인의 복지는 결코 높아질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요양시설 확충 vs 주거환경 재조성

현재 뮌헨시는 복지제도 개혁에 대한 문제를 두고 두 가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중 한 측인 뮌헨 시의회 정치인들은 복지시설 확충이라는 손쉬운 해결책이 아니라 시민 개개인이 노년의 삶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주거 형태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이는 공공 수용시설 개선 문제를 떠나 개인의 고유한 삶의 방식과 취향을 존중할 수 있는 독립적인 주거 형태를 마련하고 재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시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지금의 복지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개인의 안정과 취향까지 존중할 수 있는 세밀한 형태의 복지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뮌헨시의 사회 행정부처에서는 개별 요양시설의 수용 공간을 확충하는 계획을 이미 수립해 놓은 상태다. 이들은 오는 2030년까지 요양원 등의 시설에

1000여 개의 노인 거주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독일 요양시설의 현주소

요양시설 숫자나 수용 인원을 늘리는 것이 열악한 노인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책일까. 현재 독일에서는 요양 시설에 대한 인식이 과거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뮌헨의 경우 전체 요양시설의 3%에 해당하는 8500여 개의 자리가 비어있는 상태다. 또 300여 개 시설은 전문인력 부족으로 실질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다.

휴브너 의장은 지금이 독일 요양원과 각종 시설들에 커다란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한다. 해가 갈수록 독일은 요양시설에서 노년의 삶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시니어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점은 미국, 한국 등 여러 국가들이 보여주는 트렌드와는 다소 상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용시설 형태의 요양기관들이 독일에서 기껏해야 10~15년 정도까지밖에 존속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이 입원 방식 요양시설을 평균 반 년 정도밖에 이용하지 않고, 점점 많은 시민이 요양시설이 아닌 다른 형태의 돌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차선택 전략한 요양원 대체 주거 프로젝트 구상

“오직 치매환자만이 요양원에 오래 머물러 있다.”

요양시설이 다양한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음에도 독일 사

람들은 노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한 장소로서 요양원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않는 경향이 늘고 있다. 사람들은 치매와 중증질환처럼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요양시설을 찾고 있으며, 다른 수단과 방법이 존재한다면 굳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는 추세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취향과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유럽인 특성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현재 뮌헨에서 재정비가 시급한 요양시설을 꼽아보면 그 수가 많지는 않다. 그렇기에 요양시설들을 재정비한다는 행정부처의 정책들은 노인들의 거주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큰 의미가 없다. 보다 시급한 것은 노인 요양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해결하는 일이다.

뮌헨 시의회 소속 정치인들은 도심 행정구역에 노인 복지와 관련해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서 플레게하임을 재정비하거나 새로 수립하려는 앞으로의 계획을 바꾸고, 노인 개개인의 주거환경에 초점을 둔 주거 프로젝트인 본프로젝트(Wohnprojekt)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주로 시민당과 녹색당의 요구다.

이는 '요양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이전까지의 정책 방향을 '사는 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하는 노년기를 수용기관에 의탁해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보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지금까지의 복지제도는 큰 범주 안에서 간호와 요양을 받아야 하는 불특정한 개인을 공공의 활동 영역 속에 가두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노인 각자의 삶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세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라이프치히의 모범 사례

우선 시민당과 녹색당은 뮌헨시를 상대로 도시정비사업 일환으로 새로운 노인 요양소를 짓는 일을 그만둘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뮌헨시는 그동안 새롭게 정비하는 신도시 구역들에 특별히 새 요양원을 지어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도모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요양시설은 이미 그 수가 충분한 까닭에 이를 더 늘릴 필요는 없다. 더구나 요양시설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 시니어 숫자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요즘의 현실을 고려해 본다면 이는 시대에 뒤떨어진 도시정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당과 녹색당에서는 새 요양원을 지을 자금을 임대주택조차 보유하기 어려운 생활환경에 놓인 노인들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독일 동부에 위치한 라이프치히는 요양시설에 의존하기보다 시민개개인이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노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세심한 정책들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주지 돌봄, 즉 크바티어플레게(Quartierpflege)로 알려진 프로젝트를 통해 라이프치히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니어들과 개별적으로 연대하고 있으며, 시니어들의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민들로 이루어진 이러한 봉사단체는 지역 내 거주민들의 실태를 자세하게 조사하는가 하면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로 노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을 중심으로 최대한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노인들은 가능한 한 자신의 생활환경을 떠나지 않고도 필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도시 행정처와 협상할 수 있다. 주거지 개조와 개선, 이웃과의 친밀한 교류, 의료와 간호를 받을 수 있는 개별적인 서비스 신청, 응급 상황에 대비한 설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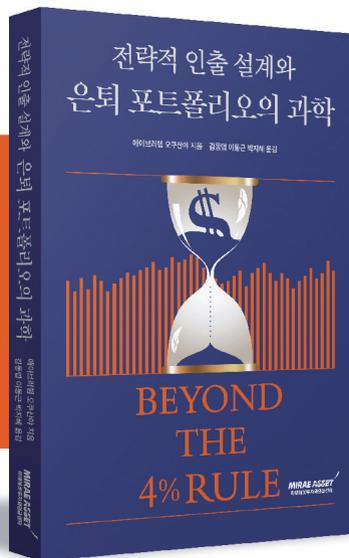
정책 차원에서 든든한 후원을 받는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시민들은 안전한 공동체 속에서 깊은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노인들이 쉽게 처할 수 있는 불안정한 삶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M**

거주지 돌봄, 즉 크바티어플레게(Quartierpflege)로 알려진 프로젝트를 통해 라이프치히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니어들과 개별적으로 연대하고 있으며, 시니어들의 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략적 인출 설계와 은퇴 포트폴리오의 과학

에이브러햄 오쿠산야 지음 | 김동엽 이동근 박지혜 옮김

국내 금융권 최초 노후자금 인출 지침서
노후자금 '인출' 전략은 '적립' 전략과 다르다!



BEYOND THE 4% RULE

- ✓ 인출 전략의 권위자, '4% 법칙' 창시자 윌리엄 벤겐의 강력 추천!
- ✓ 수명과 지출, 물가 변화를 고려해 노후자금을 효과적으로 인출하는 전략은?
- ✓ 자산배분을 어떻게 해야 노후자금의 인출 기간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을까?

OLD

글·그림 - 홍승우



멈추지 않는 눈물이 되었다.

어머니는 빗 청산 이후 자식들에게 폐 끼치는 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셨고

자식들 짐 되면 안 돼! 정신 바짝 차려요!

캐나다에서 돌아온 아내는 돈벌이를 시작했다.

인터넷 일어 강사.

ます。ません。

아이들은 대학을 접고 자신의 길을 찾아보겠다고 한다.

대학 나와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 돈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할래.

나는 이제 큰 부담감은 던 상태로 살고 있다.

아. 하늘이 이렇게 예뻐구나.

전혀 못 느끼면서 살았어.

다시 보니 많이 늙었네.

집 장만 영끌족 2030세대.

NEWS

영끌 빚투

부동산 값 폭락과 고금리로 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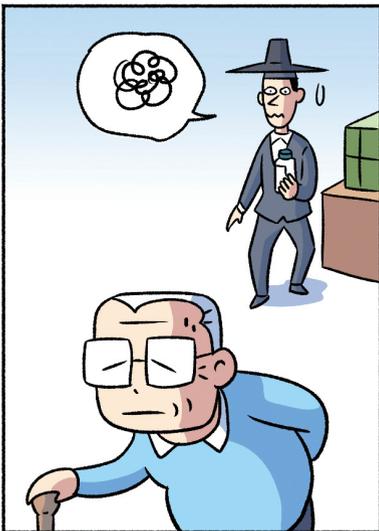
겪어본 사람은 그 마음을 안다.

아이고~! 어찌냐~. 저 젊음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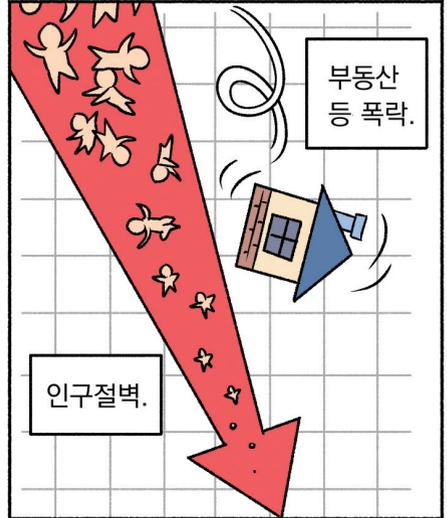
영끌은 영혼까지 끌어모으는 게 아니야.

빚

영혼이 끌려다니는 거지.



안 넘어가네!



일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 그림 같은 집 사고 싶을 때 필요한 9가지 점검 포인트



생활을 해볼 것을 권유한다. 전세생활을 해보면 전원주택의 문제점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나중에 집을 지을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건축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2~3년 사이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전원주택 건축비용은 6억~10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웬만해선 엄두도 내기 힘든 큰 금액이 됐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한 기존 전원주택을 매입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물론 중고주택을 고치는 수리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지만, 전원주택 신축비용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는 것이 장점이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수도권 위성도시에서 많은 전원주택이 매물로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엔 좋은 집도 있지만, 엉터리 주택도 많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노후자금 많이 투입된 집에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큰 고생을 한다는 점에서 시골 경치에 매료돼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다. 전원주택을 매입할 때 유념해야 할 포인트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Point 1 특별한 디자인의 전원주택은 가급적 피한다. 유리를 아주 많이 사용했거나 내부구조와 외부구조가 특이한 집이 여기에 해당한다. 겉으론 멋지게 보이지만,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나중에 매각하고자 할 때 잘 안 팔릴 수도 있다. 또 특이한 자재를 사용한 집은 수리를 할 때 도시지역 전문업체를 불러야 하기 때문에 수리비용이 비싸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Point 2 시공회사가 판매 목적으로 지은 주택은 피한다. 건축 과정을 보지 못하고, 완공된 집을 구입하는 것이기

Editor 송양민 가천대학교 특수치료대학원장

■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은퇴자들의 희망 주거생활 양식'에 따르면, 은퇴 후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45%로 도시생활을 희망하는 비율 34%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장을 다닐 때 갑갑한 아파트와 혼잡한 도시공간에서 오래 부대끼며 살다 보니, 은퇴 후엔 경치 좋고 조용한 전원에서 은퇴생활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꿈과 현실은 다르다. 겉모습만 보면 전원생활이 멋지게 생각되지만, 전원주택 생활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순진한 은퇴자들이 잠시 한눈을 팔면, 시공회사와 건축사가 중간에서 돈을 빼먹고 부실공사를 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전원주택을 지었고, 부실공사 뒷수습을 하느라 등골이 휘어본 경험이 있는 당사자로서, 전원주택을 지으려는 은퇴자들에게 해당 지역에서 먼저 전세

때문에 집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어떤 건축자재를 사용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쓰레기를 벽 속에 넣고 공사를 마감해 나중에 골머리를 앓는 사례도 있다. 시공사 판매주택은 보증기간이 끝나면 고쳐야 할 곳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이런 집을 살 때는 시공회사에 요구해서 건축도면과 시공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Point 3 전원주택은 무엇보다 단열이 중요하다. 산속 기온은 도시보다 3~5도 더 떨어지기 때문에 우수한 단열재를 사용하지 않으면 겨울을 지내기가 힘들다. 중고주택을 살 때는 어떤 단열재를 썼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시스템 창호를 썼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일반 창호는 단열성이 떨어져 보온기능이 약하다. 필자의 전원주택도 처음엔 일반 창호를 썼다가 나중에 다 뜯어내고, 시스템 창호로 교체하면서 상당한 돈을 낭비했다.

Point 4 가파른 길이나 언덕 위에 있는 전망 좋은 집은 피한다. 전망 좋은 집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하지만, 눈이 내리는 겨울이 되면 '쥐약'이 된다. 시내로 나가려면 승용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데, 비탈길에 눈이 쌓이면 차가 움직일 수 없다. 따라서 언덕 위에 사는 사람들은 한겨울엔 수시로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 눈을 안 치우면 금방 빙판길로 변해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된다.

Point 5 지하수로 먹는 물과 생활용수를 사용하는 집은 좋지 않다. 평소엔 정수기를 사용해 물을 먹을 수 있지만, 여름에 가뭄이 발생하면 지하수 수량이 부족해진다. 변기 사용과 식기 설거지가 불가능해지고, 정원과 잔디밭에 물도 줄 수 없다. 지하수를 뽑아내는 기계장치가 고장 나면, 물통을 들고 이웃마을에서 물을 떠와야 한다. 어디까지나 지하수는 '보조용'일 뿐이고, 상수도를 연결한 집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

Point 6 집 외장에 목재를 많이 사용한 집은 좋지 않다. 목재가 사용된 창틀이나 외부 벽체는 빗물이 들어가면 매년 조금씩 썩어간다. '썩지 않는 나무'는 결코 없다. 외벽에

목재가 노출된 전원주택은 1년에 1~2번씩 사다리차를 불러 방수용 페인트를 발라야 하는데, 이런 작업은 힘들기도 하지만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

Point 7 목재구조 주택으로 2층 욕실이 있는 집은 방수작업이 잘돼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만약 2층 욕실에서 물이 새 1층 천장으로 누수가 되면 곰팡이가 생기거나, 심각할 경우 천장이 무너진다. 또 2층을 오르내릴 때 계단이 많은 집은 피하는 게 좋다. 2층집은 외관상 예쁘게 보인다. 그러나 고령자들은 무릎이 좋지 않아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3층 전원주택을 지을 때 미리 엘리베이터 공간을 만들어 나중에 대비해 놓았다.

Point 8 대규모 단지로 구성된 타운하우스는 피하는 게 좋다. 타운하우스는 주택과 주택 간 간격이 좁고, 마당이 오픈되어 있다. 그래서 강아지 짖는 소리, 노랫소리 등이 옆에서 가깝게 들린다. 이런 생활소음이 크게 나면, 이웃 간에 감정이 상하고 불편해진다. 이런 일이 잦으면 '이웃사촌이 결국 '이웃 원수'로 변한다. 노년을 조용히 살고 싶은 은퇴자들에게 단지형 타운하우스는 좋은 선택이 아니다.

Point 9 마을 주변에 공장이나 오염시설이 있는 전원주택은 피한다. 근처에 소나 닭, 돼지를 키우는 축사가 있을 경우 1년 365일 냄새가 난다. 또 시멘트공장 같은 공해업소가 있으면 미세먼지가 날려 집 안이 더러워진다. 주차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은 대중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승용차를 타고 이동해야 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면, 마을 공터나 길가에 차를 세우게 되지만, 이는 편법일 뿐이고 오랫동안 사용하기는 힘들다.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에겐 전원주택의 단점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급한 결정으로 좋지 않은 주택을 매입할 경우, 전원생활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의 시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전원주택을 짓거나, 매입하려는 사람들은 사전에 체크 사항을 잘 살펴봄으로써 실수를 줄이고, 전원생활의 문제점을 잘 극복해 나가기를 권하고 싶다. **M**



Editor 이근후 이화여대 명예교수,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저자

■ 한창 정신과 의사로 일하던 때의 한 일요일이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른 아침에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이나 저녁 늦게 전화벨이 울리면 좀 불안하다. 직업 때문일까, 나는 정신과 환자를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 이런 전화는 병실에 응급 상황이 생겼을 경우가 많다. 정신과 병실에서 응급 상황이란 환자가 폭행을 하거나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난폭해진다거나 아니면 자살을 시도하는 등이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수화기를 들었다.

“누구세요?”

병동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물어보았다.

“나 옥길이야.”

“옥길이?”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긴 한데 누구인지 모르겠다. 모르는 사람이 이른 아침에 전화를 건다는 것도 또한 불안한 일이다.

“옥길이가 누고(누구나라는 경상도 사투리)?”

“총장.”

이크, 김옥길 총장님이시구나, 나는 전화를 받으면서 좀 긴장했다. 긴장했다는 말은 총장님에게 좀 쟁기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은 이렇다. 1973년 3월 재직하고 있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조교수로 직장을 옮겼다. 발령을 받고 총장실에 인사차 들렀는데 계시지 않아 부총장님에게만 인사를 드리고 온 터라 마음에 쟁긴 것이다. 병원에 근무하다 보니 총장님께 인사를 간다는 것이 하루 이틀 미루다가 얼굴도 뵈지 못하고 전화를 받게 된 것이다.

“이 교수 오늘 나 좀 만나보라우.”

앞뒤 설명도 없이 그냥 만나보자는 이야기였다. 왜 만나자고 하는지 물어보지도 못했는데 예배가 끝나면 만나보자는 말씀만 하시고 전화를 끊었다.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중강당으로 갔다. 당시 교직원들은 일요일예배를 중강당에서 봤기 때문에 그곳으로 찾아갔더니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다. 뒷자리의 빈자리에 앉아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예배가 끝나자 총장님이 복도로 걸어오시면서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내 앞에 오시더니 뜬금없이 중년 부인 한 분을 소개했다.

뜬금없이 소개한 중년 부인 한 분

“이 교수, 오늘 총장 차를 내어줄 테니 이분하고 데이트 좀 해보라우.”

그러시고는 총장 공관으로 가버리셨다. “총장님은 날 총각으로 아시나 보다”라는 똥판지 같은 연상을 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총장 차를 타고 데이트에 나섰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 생각하다 메디컬 센터의 스칸디나비안 클럽으로 갔다. 당시에 뷔페를 하는 곳은 이곳이 유일했다. 함께 가서 맛있는 뷔페를 먹고 곁에 있는 조용한 차 마시는 공간으로 가서 데이트를 즐겼다. 그분은 기분이 좋은 듯 말씀도 잘하시고 유쾌한 표정이었다.

나는 오늘의 데이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그분에게 물어보았다. 그분 대답은 자신은 외국에 살고 있는데 오랜만에 귀국해서 총장님에게 인사를 갔더니 중강당에서 만나자고 해서 왔다가 데이트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피차 경우가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근차근 환담을 나누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이래서 총장님이 데이트를 해보라고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 대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부인이 하신 말씀은 조리에 맞지 않았다. 약간의 과대망상도 있었고 사고의 비약도 심했다. 일견해서 조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진단 매뉴얼대로 차근히 문진을 해보았더니 조증이 확실하다. 데이트를 마치고 총장님께 찾아가서 그 부인의 상태를 말씀드리고 3개월 정도 입원 치료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다. 총장님은 그 부인을 향해 이 교수가 잘 돌봐드릴 거니 3개월 정도 폭 쉬라고 하시면서 나에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 이래서 총장님이 데이트를 해보라고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 대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부인이 하신 말씀은 조리에 맞지 않았다. 약간의 과대망상도 있었고 사고의 비약도 심했다. 일견해서 조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두 번째로는 치료자인 나에 대한 배려다. 총장님이 보시기에 환자 같으니 나보고 잘 보라고 했다면 총장님 말씀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 부인을 보았을 것이다. 그냥 데이트를 하라고 하신 말씀은 나에게 그런 선입견을 주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 같다.

한 번 더 당부를 했다. 이분은 우리 졸업생인데 잘 살펴드리라고 하셨다. 나는 이화여대로 온 지 얼마 되지 않고 김옥길 총장님에 대해 아는 바도 적었다.

평안도 시골에서 출생해 이화여전을 졸업하고 40세 젊은 나이에 총장의 중임을 맡으신 정도의 정보밖에는 알지 못했다. 그런데 직업적인 경험 탓일까. 김옥길 총장님은 배려심이 참 큰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이날 만남이 첫 만남인데 내가 왜 이런 추측성 인상을 받았느냐 하면 두 가지 이유에서다.

환자와 치료자 모두를 배려한 지혜

하나는 우리 졸업생에 대한 배려다. 처음 찾아왔을 졸업생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아셨을 텐데도 그런 방법으로 데이트를 해보라고 했으니 그것이 배려했다는 증거다.

흔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받으면 정신과 의사를 소개해줄 테니 치료를 잘 받아보라고 했을 텐데 그런 말씀은 하지 않고 데이트를 해보라고 하셨으니 그것이 큰 배려다. 왜냐하면 정신과에서 치료받아보라고 권한다면 대개는 자기 자신을 정신병 환자로 취급한다고 저항하면서 아니라고 많이들 거절한다. 이런 직설법을 피해 데이트를 권했으니 심려 깊은 배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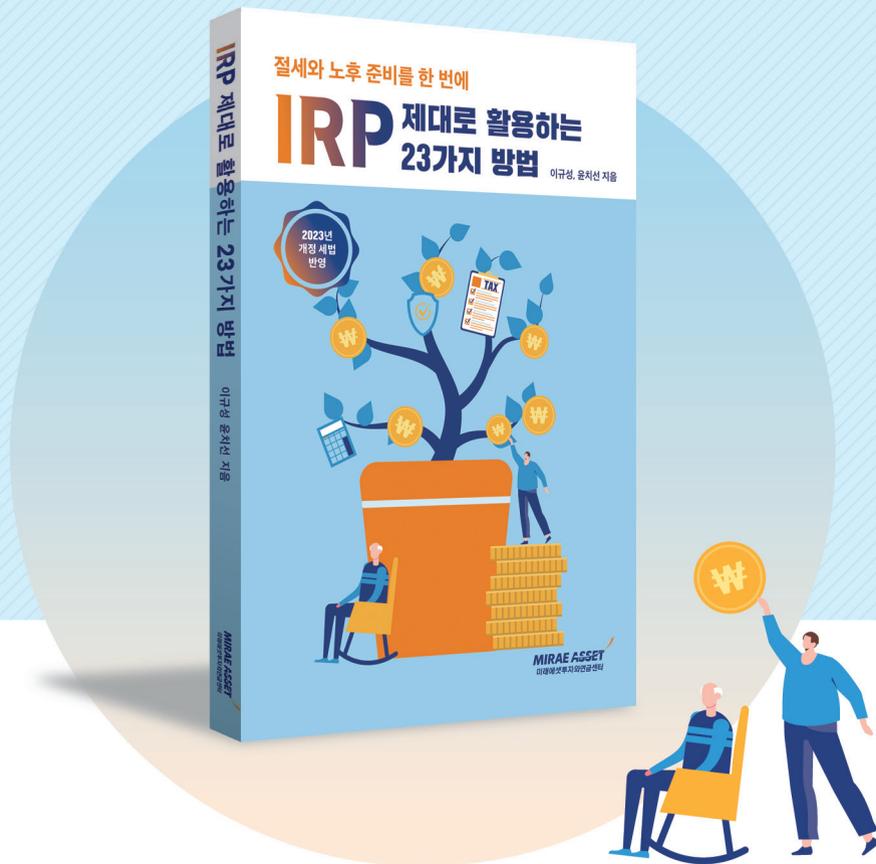
두 번째로는 치료자인 나에 대한 배려다. 총장님이 보시기에 환자 같으니 나보고 잘 보라고 했다면 총장님 말씀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 부인을 보았을 것이다. 그냥 데이트를 하라고 하신 말씀은 나에게 그런 선입견을 주지 않으려고 하셨던 것 같다. 만일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나는 총장님의 말씀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 테두리 안에서 환자를 보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다른 상황을 놓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나를 배려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은 단지 나의 경험적인 상상일 뿐 김옥길 총장님에게는 물어보았다거나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정말 내가 추측하듯 그런 배려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내가 받은 첫인상은 총장님은 배려심이 많은 분이라는 것이다.

이 일로 인해 총장님에 대한 나의 첫인상은 호감이었다. 사람들에게 첫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 중요한 일이다. 그의 배려심으로 인해, 나는 깊은 호감을 가질 수 있었고 이것이 총장님이 타계하실 때까지 내 마음을 사로잡은 핵심적인 인상이 되었다. **M**

IRP 제대로 활용하는 23가지 방법

[개인형 퇴직연금]

이규성 윤치선 지음



절세부터 노후 준비까지 한 번에

- 노후준비를 위한 머스트 헤브 아이템(Must Have Item), IRP
- 가입부터 운용, 연금 수령까지 IRP 활용의 모든 것을 한 권에 담다!
- 이직이 잦은 젊은 직장인부터 은퇴를 앞둔 퇴직예정자까지 모두의 필독서!



39개 중 31개의 퇴직연금 금융회사가 미래에셋 TDF를 선택했습니다

- 총 39개 퇴직연금 사업자의 31개가 미래에셋자산운용 TDF 포함
- 총 220개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 중 96개 미래에셋자산운용 TDF 포함
(원리금 보장형 제외, 2022년 12월 고용노동부 기준)
- TDF 설정액 1위(2022년말 금융투자협회 기준)

● 미래에셋 전략배분TDF ● 미래에셋 자산배분TDF

■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 금리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465호 (2023.02.13 ~ 2024.02.12)

원칙을 지키는 투자 -
MIRAE ASSET
미래에셋자산운용

증권업계 최초!

미래에셋증권의 글로벌 투자 전문가가 직접 운용하는 개인연금 랩어카운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어렵고 신경쓰이는 개인 연금투자!
이제, 연금저축도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고객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와 철저한 사후관리까지
글로벌 투자 전문가가 관리해드립니다.

[고객 투자성향에 적합한 포트폴리오 제공]
개인연금 Wrap70+/40+/30+/20+



개인연금 랩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미래에셋증권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미래에셋증권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부동산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랩계약은 고객별로 운용, 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입니다. ■ 랩계약은 위탁매매 수수료와 랩계약의 수수료는 없으나,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 등에서 정한 보수, 수수료, 증권거래비용 등의 비용은 고객님이 별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개인연금 랩어카운트는 고객별로 운용·관리되는 투자일임계약이며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만 가입 가능합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2-03781호 (2022.11.09~2023.11.08)

글로벌 투자 파트너-
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비과세로 투자하고
[관련 세법 항목 시]

잘 나가는 글로벌펀드를
수시로 추가하고 바꿀 수도 있고

[미래를 보는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e-Must Have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일부 펀드에 따라 변경횟수 제한,
필요할 때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중도인출도 가능하고

[중도인출 가능기간 및 횟수제한,
수수료 발생 가능,
중도인출 전후 환급금 동일하지 않음]

글로벌 투자하는 좋은 방법, 미래에셋생명 변액보험

- 잘 나가는 글로벌펀드 수시 추가·교체
- 비과세 혜택, 중도인출 가능
(중도인출 가능기간 및 횟수제한, 수수료 발생 가능, 중도인출 전후 환급금 동일하지 않음)
- 미래에셋생명 홈페이지에서 영상광고도 확인하세요 life.miraeasset.com

[e-Must Have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상품은 KB국민은행에서 판매 중입니다]

■ 변액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약관에서 정한 최저보증하는 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변액보험은 특별계정의 운용결과에 따라 납입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특별계정 운용실적(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외형 특별계정의 경우 환율변동 시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22-02919호 (2022-06-27 ~ 2023-06-26)

